

제433회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록** 제 1 호
(임시회)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

국 회 사 무 처

일 시 2026년3월26일(목)

장 소 문화체육관광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5)에 대한 공청회
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1.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상정된 안건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5)에 대한 공청회 2
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15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32
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32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32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32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32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32
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32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32
11.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32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32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32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7382)	32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33
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33

(14시02분 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2건의 공청회를 실시한 후에 이어서 법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8795)에 대한 공청회

○소위원장 임오경 의사일정 제1항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지에이치스튜디오 대표이십니다.

다음은 오하영 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이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계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 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재현 진술인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김재현 안녕하세요? 지에이치스튜디오 대표 김재현입니다.

저희 스튜디오는 유튜브 ‘계향쓰’라는 애니메이션 채널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약 6년간 운영 중이며 글로벌 알파세대를 타겟으로 약 2700만 명 정도의 구독자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년 동안 이런 뉴미디어산업에 종사를 하면서 많은 크리에이터들과도 교류를 하고 그들의 고충과 저희 고충도 많이 나뉘었는데요. 지난 6년 동안 뉴미디어 생태계에도 변화가 굉장히 많이 일어났는데요. 그중에서도 크리에이터 이코노미 측면에서 이 생태계가 어떻게 변화했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중에 가장 큰 것은 쇼트폼 콘텐츠가 나오기 전과 후로 나뉘질 것 같은데요. 불과한 3년에서 4년 전까지만 해도 롱폼 콘텐츠만 있었고 유튜브나 틱톡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쇼트폼이 없었기 때문에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들이 롱폼 콘텐츠 위주로 업로드를 해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롱폼 콘텐츠 같은 경우에는 영상의 앞과 뒤, 중간에 여러 가지 구글 애드센스 광고들이 붙었기 때문에 조회수 수익만으로도 생계를 유지하거나 사업을 확장하거나 그리고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기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쇼트폼 콘텐츠가 나오면서, 사실 여기 계신 분들도 다 경험해 보셨겠지만 지하철이나 어디 갔을 때 핸드폰을 가로로 드는 모습보다 세로로 들어서 엄지손가락으로 위아래로 움직이면서 쇼트폼 콘텐츠를 보는 것을 많이 목격할 것입니다. 그만큼 해외 전체적으로 쇼트폼 이용률이 현재 80%가 넘을 정도로 쇼트폼 콘텐츠가 지금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크리에이터는 어쩔 수 없이 콘텐츠의 방향성을 쇼트폼으로 전환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는 쇼트폼 같은 경우는 애드센스 수익이 영상이 10번 스와이핑(swiping)되었을 때 한 번만 광고가 나오기 때문에 기존 롱폼 콘텐츠의 수익보다 최대 30배에서 40배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제작비를 리쿱(recoup)하기에 좀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대부분의 크리에이터는 어떻게 해결방안을 가지고 왔냐면 다른 비즈니스 사업을 본인의 채널에 가지고 와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요.

대표적인 사례를 말씀드리자면 한 몇 년 전에 저희가 크리에이터들과 교류를 하면서 만났을 때는 ‘우리가 어떻게 킥래버를 해서 많은 시청자들이 조금 더 재미있는 콘텐츠를 즐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조회수를 높게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발전적인 대화를 나눴다면 최근에 만났을 때는 ‘나 최근에 화장품 사업 따 왔어, 그래서 돈 얼마 받았고 너회는 요즘 어때? 그게 돈이 돼?’ 하면서 뭔가, 여기서 안타까운 점은 한국의 뛰어난 크리에이티비티(creativity)가 창의적인 콘텐츠에 집중되기보다는 생계를 위한 비즈니스 콘텐츠 쪽에 많이 할애가 된다는 점에 아쉬운 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사례를 좀 말씀드리자면 저희 채널 같은 경우는 초기에 조회수 수익을 많이 얻기 위해 메가 IP나 인디 게임의 IP를 활용해서 2차 저작물 위주로 채널 운영을 하다가 약 3년 전부터는 자체 IP로 부가사업을 이끌어 가야 회사 운영도 조금 안정적으로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다양한 오리지널 콘텐츠들을 제작을 하기 시작했고 많은 성공 사례를 이루어 왔습니다. 그러다가 조금 더 욕심이 나서 대규모 자체 투자를 해 가지고 저희가 새로운 어떤 과감한 도전을 했다가 큰 실패를 겪게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직원들 절반 이상과 이별해야 되는 좀 가슴 아픈 일도 있었는데요.

그렇게 되면서 저희가 부족한 점이 무엇인가 생각을 해 봤을 때 조금 더 안정적으로 회사를 운영하려면 우리도 지원정책 쪽으로 눈을 한번 돌려봐야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래서 한 2년 전부터 지원사업에 눈을 돌리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원사업을 봤을 때 여기는 우리 크리에이터들이 설 자리가 없구나라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예를 들자면 숏드라마를 하는 ‘너덜트’나 ‘숏박스’ 그리고 ‘뽕’ 채널 같은 경우는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이 드라마 쪽과 경쟁을 해서 지원사업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고 예능 쪽을 하시는 분들은 예능 기업들과 경쟁을 해서 지원사업을 따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너무나 감사하게도 작년에 저희는 애니메이션 쪽으로 콘진원에서 하는 초기본편 지원사업에 선정이 돼서 지원을 잘 받고 제작을 성공적으로 마무리를 했는데요.

여기서도 조금 아쉬웠던 부분은 사실 트렌드 자체는 쇼트폼 콘텐츠가 대세이지만 아직까지는 지원정책 자체가 조금 레거시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장편이나 중편 위주의 긴 영상을 제작하다 보니까 저희 회사 입장에서는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지원정책을 받아야만 했었고, 하지만 이런 저희의 리소스들을 대체가 아닌 조금 과거에 머물러 있는 어떤 미디어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이 아쉽게 느껴졌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례를 좀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메가 유튜버들 말고 1인 창작자분들과도 소통을 꽤 많이 했었는데요. 사실 한국에 잘 알려지지 않은, 사실 저희 채널만 보더라도 구독자가 2700만 명인데 한국인 구독자가 1.8%밖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 채널을 아는 한국인들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와 비슷하게 1인 창작자인데도 구독자가 1000만 명이 넘고 수백만 명이 넘는 채널들이 있는데 이 친구들이 좀 힘들어하는 부분이 사업을 확장하고 싶은데도 유튜브 브나 이런 SNS플랫폼 같은 경우는 연재가 조금 중단이 되거나 그랬을 때 알고리즘적으로 굉장히 큰 타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이 사업을 확장하려면 직원을 뽑아야 되고 그러려면 노무와 세무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적으로 굿즈를 판매하거나 어떤 사업을 연계했을 때도 채널을 중단하지 않고서는 이런 일들을 더 이상 수행하기에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번아웃이 와서 채널을 중단하고 이 사업을 포기하는 친구들도 많이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해결방안을 드리기에는 조금 어렵겠지만 저의 좁은 식견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일단 첫 번째로 저는 크리에이터의 실태조사가 너무나도 미비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 미디어산업에 종사하는 1인 창작자의 수와 창작기업의 수가 얼마큼 되고 그리고 잘 알려지지 않은, 아까 말씀드렸던 한국의 K-콘텐츠를 글로벌로 훌륭하게 잘 수출하고 있는 크리에이터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에 대한 조사가 먼저 필요

할 것 같고.

그리고 이건 저희의 사례인데요, 저희가 최근 5년간 한국 조회수 랭킹으로 항상 3위 안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가짜뉴스로 저희 채널이 1년에 수익을 한 400억, 500억 번다는 뉴스들이 있는데 실제로 쇼트폼으로 가면서 수익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몇십 배 이하로, 사실 매출은 그 정도로 발생을 하는데 대부분 인건비로…… 이런 지원사업 없이 또는 저희 회사에 다른 비즈니스를 끌고 오지 않는 이상 회사를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크리에이터, 창작업자들이나 창작자들이 실제로 얼마 정도의 매출을 벌고 있고, 이들이 좋은 콘텐츠를 만들 수 있게 몰입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는 게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저의 아이디어는, 사실 이런 지원정책을 펼칠 때 구독자 수로 판별을 해서 구독자 수가 높다고 무조건 지원을 해 주는 게 아닌 IP 중심으로 해당 IP가 최근 몇 개월간 활성 조회수가 어느 정도 나왔는지를 판별해서 그들에게 아주 큰 금액이 아닌 아주 소액이더라도 창작에 몰입할 수 있는 지원만 1단계로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콘텐츠들이 조금 도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을 것 같고, 다음 단계로는 그 발굴했던 IP들 중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를 것 같거나 성공 궤도에 오른 IP들을 잘 선정해서 여기에는 조금 더 큰돈을 집중 투자를 해서 1인 창작자가 창작 기업으로 변하고 단순한 작은 IP가 글로벌 K-콘텐츠로 도약을 할 수 있게끔 지원을 해 주신다면 정말 좋은 기회가 마련이 될 것 같습니다.

콘텐츠진흥원에도 드라마나 웹툰, 게임 등 다양한 K-콘텐츠 성공 사례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런 좋은 성공 경험들을 뉴미디어산업에 반영을 잘해 주신다면, 사실 저는 넷플릭스 OTT나 레거시 미디어보다 아무래도 진입장벽이 낮은 이런 뉴미디어 플랫폼에서 더 좋은 콘텐츠들이 발휘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이런 지원정책이 이 부분에 잘 발휘된다면 세상을 놀라게 할 K-콘텐츠들이 주기적으로 꾸준히 한국에서 나오지 않을까 하는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재현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오하영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오하영 안녕하세요?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오하영입니다.

저는 앞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 주셨던 산업 환경에 맞춰서 이 법안이 왜 필요한지 그리고 의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김 대표님께서 말씀 주신 것처럼 유튜브, 쇼트폼, 버추얼 휴먼으로 대표되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는 국민의 일상적 문화 향유 대상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초기 개인 창작자 중심이었던 생태계는 MCN 그리고 전문 제작사, 스튜디오, 신기술 기반 기업으로 빠르게 다변화되었고 생성형 AI와 버추얼 프로덕션 등 기술융합도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영상콘텐츠산업의 외형과 구조가 근본적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책은 여전히 초기 개인 창작자 중심의 프레임에 머물고 있습니다. 산업을 이끄는 다양한 주체들을 아우르는 통합적 지원 근거가 없고 법제 역시 이 산업의 실체를 담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제를 살펴보면 각 법률이 서로 다른 목적 아래 제정되어 상이한 정의 체계를 담고 있어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전반을 아우르는 일관된 법

적 기반이 없다라고 사료됩니다.

문화산업진흥 기본법은 디지털문화콘텐츠, 사용자제작문화콘텐츠 등의 개념으로 이 산업을 포괄하고는 있으나 기본법의 성격상 산업 특성에 대응하는 개별 진흥 조항을 따로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콘텐츠산업 진흥법은 게임, 음악, 만화 등 전 장르에 걸쳐 적용되는 수평적 법률로 영상콘텐츠에 특화된 진흥 정책의 근거로 기능하기 어려운 구조입니다.

영상진흥기본법은 영상물을 유형물에 고정된 것으로 정의하고 있어 온라인 유통 중심의 뉴미디어영상콘텐츠를 사실상 포괄하지 못하고,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전문 제작사나 전문 배급사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종합하면 이 산업은 기존 법률의 적용 범위 안에 들어가기는 하지만 온라인 채널 중심의 유통, 쇼트폼 등 형식의 다변화, AI와 같은 신기술 기반 창작 그리고 이용자의 참여 같은 핵심 특성을 반영한 진흥 정책을 수립하는 데 있어 한계를 동반하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산업 특화 법률이 필요한 이유와 이번 법률안의 의의를 네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이 법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을 처음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세부 콘텐츠 유형을 제시합니다.

기존 유관 법령이 영상콘텐츠를 전송 수단이나 유통 수단 아니면 그 방식을 기준으로 정의해 온 것과 달리 이번 법률안은 이용자와의 심도 있는 상호작용,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는 접근성, 문화적 요소를 고유적 속성으로 명문화하고 온라인영상채널콘텐츠, 초단편영상콘텐츠 그리고 문화기술융합영상콘텐츠 등 세부 유형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간 유사한 개념들이 여러 법률에 분산되어 있었음에도 이 산업만을 위한 정의 체계가 없었다는 점에서 이번 법률안이 그 출발점에 자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둘째, 이 산업을 IT·플랫폼 산업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위치 짓고 있습니다. 문화적 가치 및 창작 활성화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술성 창의성 오락성 여가성 대중성 등 문화적 요소를 콘텐츠의 본질적 속성으로 규정함으로써 진흥 정책의 방향과 정체성을 제시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산업 내의 다양한 주체를 법적으로 정의함으로써 정책 집행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획·제작 전반을 책임지는 기획창작업자, 실연의 방법으로 창작에 참여하는 채널 콘텐츠 실연자 그리고 온라인영상채널제공사업자 등 산업을 실질적으로 이끄는 주체들의 역할과 범위를 각각 법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원과 보호의 대상이 명확하지 않으면 정책 집행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이 조항들이 갖는 역할에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갖추고 있습니다.

유관 사업자가 참여하는 자율협의체 운영 근거를 마련하고 자율규약 형성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표준계약서를 마련·보급·이들 사용하는 사업자에게 창·제작 지원에서 우대를 부여하는 구조를 다루고 있습니다.

1인 창작자와 소규모 제작사, 이들이 규모 있는 플랫폼사업자들과 거래를 하는 데 있어서는 구조적 협상력 격차를 체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현행법 체계에서는 뉴미

디어 영역 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격차를 조율할 수 있는 전문 규정이 없었다는 점에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률안으로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 및 육성에 관한 법률안이 발의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두 법안의 성격과 지향이 다릅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법안은 부호 문자 음성 음향 이미지 등 다양한 디지털 창작물을 폭넓게 포괄하나 영상콘텐츠산업의 구조적 특수성은 특화된 법률체계를 통해 별도로 다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개인 창작자 밀착 지원 조항이 주요 내용을 이루고 있어서 산업생태계 단위의 진흥을 지향하는 이 뉴미디어법안과는 접근방식이 구별됩니다. 아울러 디지털크리에이터법안은 행동강령 및 자율 가이드라인 마련, 플랫폼사업자 준수사항 명시 등 시장질서 규율에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도 차이로 논할 수 있습니다. 디지털크리에이터법안 역시 표준계약서와 공정계약 체결 등 창작자의 권익보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작권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은 그간 문화체육관광부가 수행해 온 고유 업무 영역인 만큼 소관 법률체계와의 관계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다 넓게는 유관 산업에 대한 규제, 이용자 보호를 관장하는 부처가 이 산업의 진흥을 맡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저작권 보호, 표준계약서 보급을 포괄하여 드라마 영화 웹툰 음악 등 인접 장르의 IP 연계 진흥 정책을 수립하고 운영해 왔던 문화체육관광부가 이 관련된 산업 진흥 정책을 맡는가, 이 부분도 이 법안을 고려할 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산업의 실체에 부합하는 정의 체계, 문화적 가치 중심의 접근 그리고 창작자 보호와 공정 생태계 조성 장치를 갖추고 있다는 점 그리고 창작자를 포함한 산업 내 다양한 주체의 정책 수요에 응답하는 입법안으로서 그 의의를 논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오하영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두 진술인들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먼저 오하영 진술인께 여쭙보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셨듯이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방송통신위원회 또 문화관광체육부가 플랫폼의 미디어정책 담당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 부처 간 기능이나 중복, 정책 충돌 가능성에 대해서 뉴미디어콘텐츠산업의 범위를 어디까지 정할 것인가 또 타 부처와의 역할 분담 조정은 어떤 방향으로 하면 좋은지 생각을 말씀해 주시고요.

또 김재현 진술인님께는, 애로사항을 잘 들었는데요, 저는 법안 취지에는 적극 공감합니다. 그런데 좀 여쭙보고 싶은 것은 국내 크리에이터 영상이 해외 유튜브 채널에 그대로 재업로드되거나 인기 캐릭터 IP가 동남아 또는 중국 온라인쇼핑몰에서 무단으로 상품화되는 사례가 지금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앞으로……

지금 현재는 창작자가 개별적으로 플랫폼에 신고하는 데 의존하고 있잖아요. 국가 차

원의 대응은 사실상 제한적인 상황인데 정부나 공공기관의 공동대응이나 실효성 있는 집행방안에 대해서 현장에 계시는 분으로서 이랬으면 좋겠다 하는 제안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진술인 오하영** 말씀 주신 부분들에 대해서 먼저 답변을 드리면 일단 산업의 경계 소멸 양상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유튜브를 통해서든, 그러니까 온라인 영상 채널을 통해서만 산업이 일궈지는 경우는 이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옆에 계신 김재현 대표님도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 자체를 온라인 채널을 통해서도 유통하지만 그 이외에 다른 플랫폼으로 확장할 여지도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 자체가 패션으로 가든, 웹툰으로 가든 영화 아니면 TV방송 프로그램으로도 충분히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랫폼 간의 경계 소멸도 있겠지만 콘텐츠 간의 경계 소멸이라는 점도 고려할 때 콘텐츠산업 전체를 관장하는 부처에서 이 역할들을 담당한다면 조금 더 유연하고 서로 뭔가 시너지가 날 수 있는 진흥 정책 수립하는 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좋은 방향에서의 성과들도 유튜브라는 세계를 통해서 많이 보고 있지만 어두운 면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시장 교란 상황이라든지, 아니면 이용자 보호가 필요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규율과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부처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책임 있게 소관을 하고, 산업을 키워 나가고 창작자가 레벨업해 나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 모든 장르 콘텐츠에 대한 산업 진흥 정책 경험에 있는 부처가 선택과 집중을 해서 담당하는 것이 우리 국고라든지 자원 배분 차원에서 좀 더 효율적인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진술인 김재현**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의 사례를 먼저 말씀드리자면 유튜브에서는 콘텐츠 저작권 범위를 음악과 영상 콘텐츠, 두 단위로 분류를 하는데요 음악 같은 경우는 체계적으로 저작권 관리가 굉장히 잘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영상콘텐츠 관련해서는 도용이 발생하거나 그랬을 때, 예를 들면 저의 사례로는 저희 영상을 해외 남미의 어떤 친구가 자기 영상인 것처럼 업로드를 해서 그 채널의 구독자가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응을 하려면 할 수 있는 것은 이의 제기를 해서 그 영상이 저희 영상이라는 근거를 보내 놓으면 도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포기하고 영상을 삭제하는데 악의적으로 그것을 끝까지 자기 거라고 우기면서 항소를 하는 크리에이터들도 존재합니다. 그렇게 됐을 때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은 해외랑 소통할 수 있는 변호사를 고용해서 그들과 그걸 해야 되는데 그 에너지와 리소스와 비용을 감당하기에는, 사실 그 시간에 영상 하나 더 만들어서 그냥 우리 거나 하자라는 마음으로 계속 이제까지 운영해 왔고요.

사실 여기에 대해 정부가 어떻게 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을 조금 말씀드리자면 이런 시스템만 좀 만들어진다면 진짜 엄청난 수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한국의 유명한 장빠쭈 채널도 도용을 엄청 많이 당했었고, 특히나 애니메이션 채널 같은 경우는 무단도용을 엄청 많이 당하는 상황이라서 해외 그것을 대응해 줄 수 있는 시스템만 만들어진다면 크리에이터의 수요가 엄청나게 높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이기현 위원 진술인들 말씀 잘 들었고요, 현장에서 뛰고 계신데 독려 드립니다. 정말 잘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게 굉장히 큰 산업의 단위가 되어 버렸고 규제의 영역에서 부처 간에 충돌이 좀 있어요. 그래서 지금 문체부에서 올려 놓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이 있고 과방위에서 올려 놓은 디지털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법, 이 관련된 법 2개가 올라와서 충돌하고 있습니다. 이걸 정부 부처에서 보면 대단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콘텐츠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특히 영상콘텐츠물에 대해서 진흥법이 있다는 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전체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보면 과기부의 크리에이터 업무가 방미통위가 새로 신설되면서 이전이 됐어요. 그래서 과기부는 손을 떼고 이제 방미통위가 이 일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문체부와 방미통위와의 갈등 관계로 보여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제일 궁금해하고 또 국민들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실제로 어느 법안이 뉴미디어영상콘텐츠를 중심으로 한 크리에이터들의 진흥을 위한 법안으로서 더 타당한지. 그래서 저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부처들끼리는 그럴 수 있습니다. 부처끼리 이건 내 일이다, 내 권한이 커지는 거니까. 그렇지만 실제로 현장에서는 어떤 것들이 더, 이 두 법을 놓고 봤을 때 방미통위가 규제의 기능을 할지, 아니면 문체부가 규제의 기능을 하는 것이 이 산업 진흥에서 어떤 효과를 나타낼지가 국민들도 궁금하고 저희들도 좀 궁금해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핵심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과방위에 계류돼 있는 법을 보면 영상 문자 이미지 등도 포함하는 내용이고요, 제작 및 유통하는 경우도 모두 디지털크리에이터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정책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오하영 연구위원님께 묻고 싶는데 이렇게 될 경우에는 유튜버들이 올리는 영상뿐만 아니라 블로거들이 올리는 게시글도 해당되는 것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실제로 광범위하게 크리에이터들 전체를 규정해서 하는 법하고 영상콘텐츠라고 특정하는 것하고 실제로 쇼트폼콘텐츠의 산업 진흥과 관련돼서 어떤 것들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지 한번 듣고 싶습니다.

○진술인 오하영 일단은 디지털크리에이터법안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징 중의 하나가 지금 말씀 주셨던, 이게 어찌 보면 영상에 특화된 법안이 아니라 디지털콘텐츠 자체를 포괄하는 법안으로도 읽혀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콘텐츠의 영역이 있지만 우리네 일상에서 가장 편재성이 높고 높은 이용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 영상이기도 하고 영상을 통해서 낼 수 있는 파생 효과라는 것이 더 크다는 지점들을 고려했을 때 영상에 특화되어져 있는 이 법안에 힘을 실는 것이 낫다고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디지털크리에이터법안 같은 경우에는 정의 규정 자체가 디지털크리에이터, 디지털크리에이터산업, 디지털크리에이터 미디어서비스 형태로 이 산업을 미디어와 사업자, 큰 덩어리의 사업자와 그걸 유통하는 미디어서비스제공사업자로 구별하고 있는데 이것과 좀 다르게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법 같은 경우에는 단순히 개인 창작자뿐만 아니라 연관 사업자로 들어올 수 있는 사업자까지도 다 포괄해서, 실연자까지도 포괄해

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나치게 넓은 범보다 핀셋 형태로 영상에 초점 맞춰서 출발점을 두고 연관 산업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까 말씀드렸던 굵대를 포함한 커머스사업까지도 연관해서 논의를 해 볼 수 있다면 저는 전자보다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가 집중하고 있는 부분이 조금 더 뚜렷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지점 때문에 디지털크리에이티브법안과 그리고 방미통위가 과기부의 사업을 이관받아서 진행하고 있는 사업이 창작 지원이라든지 인프라 조성 기반 이런 차원의 크리에이티브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측면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 같은 경우에는 그 외에 여러 유관 사업자까지 정의 규정으로 담아내고 있고 정책 수혜 대상으로 포괄하고 있어서 영상으로 특화되어 있긴 하지만 영상을 통해서 수혜를 누리거나 산업의 규모를 키워나갈 수 있는 사업자 주체들이 함께 들어올 수 있고 정책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 조항들을 담고 있다는 측면에서 뭔가 좀 더 집중하고 있는 법안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기현 위원 한 가지만 더 물으면, 지금 문체부가 낸 입장을 보면 여러 영상콘텐츠 중에 정치 유튜버 그다음에 보도채널, 라이브 커머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은 문화의 영역도 아니고 창작의 영역이라고 보기 좀 어려운 측면이 있는 거지요, 물건을 팔거나 자기 정치적 주장을 담고 있는 내용들이라서.

이러한 것들은 방미통위가 규제를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방미통위로 넘기고 문화적 요소가 포함돼 있는 창작물과 관련해서는 문체부가 했으면 좋겠다라는 입장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세요?

○진술인 오하영 지금 말씀 주셨던 부분을 법안에서도 아예 특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플랫폼사업이 아닌 문화산업으로 위치를 지으면서 최종 목표가 어찌 됐든 우리나라 국민이 누릴 수 있는, 향유할 수 있는 양질의 콘텐츠가 더 많아지는 것 이것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면에서 방미통위가 주관할 수 있는 영역과 좀 차별화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처에서 해낼 수 있고 해내 왔었던 지점과 또 문체부가 고유의 업무 영역으로 해 왔었던 지점에 대한 분별, 그 시각으로 이 산업을 바라본다면 소관 부처 간의 역할 분담이 오히려 더 어렵지 않게 얘기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기대를 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 이소희 위원님.

○이소희 위원 안녕하세요? 이소희입니다.

‘계향쓰’라는 이 유튜브 채널이 2000만이 넘는데, 저도 유튜브를 많이 보긴 하는데 어떻게 몰랐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기는 하는데요.

김재현 대표님께 저도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료집에서 봤을 때, 어쨌든 지금 저작권이나 권리 보호와 관련해서도 말씀을 많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해외에서는 뉴미디어 콘텐츠 창작자나 기업의 권리 침해 시에 어떠한 방향으로 지원을 하고 대응을 하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알면 우리나라에서도 지원 방안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논의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문을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나와 있는 제정안에서 지원 체계가 충분히 마련이 되었다고 보시는지도 좀 궁금하고, 부족하다면 어떤 부분을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에 대해서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오하영 부연구위원님께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법을 만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산업을 진흥시키고자 하는 것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플랫폼 규제도 같이 가야 되는 게 사실이잖아요. 그래서 이러한 충돌에 있어서 어떤 조정 체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

이 법률이 물론 제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그래도 이번의 제정에 있어서 좀 더 이런 부분이 가미되면 좋겠다 이런 게 있으시면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김재현 저 먼저 답변을 드리자면 사실 해외 사례로 저희랑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한 해외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있을 텐데 아마 똑같은 고충을 겪고 있을 거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도 어떤 게 필요할지에 대해서 고민이 조금 더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구요.

그래서 저희도 이번 제정안에 대해서 매우매우 동의하고 있지만 조금 걱정되는 부분은 그렇다면 이런 지원정책들이 만들어지고 활용이 되었을 때 어떤 크리에이터, 어떤 IP를 어떻게 발굴할 것이고 이 IP를 누가 심사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걱정이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현직의 그런 심사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아무래도 뉴미디어보다는 레거시미디어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에 스토리텔링이나 캐릭터성이나 그런, 저희는 애니메이션 쪽이니깐 이쪽으로 집중해서 말씀드리자면 그쪽으로 선정이 돼서 진짜 나중에 정말 급부상할 콘텐츠를 발굴하지 못하고 또 뉴미디어도 레거시처럼 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이디어는 아까 따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구독자 수나 채널의 크리에이터가 과거에 어떤 성공사례를 이룬 거랑은 관계없이, 그렇게 되면 사실 저희 채널이 구독자 수가 많으니까 굉장히 유리한 측면이 있지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유튜브 알고리즘, SNS, 모든 알고리즘의 방향이 과거와 많이 바뀌었습니다.

과거에는 채널 중심 알고리즘으로 형성이 돼 있어서 메가 유튜버, 즉 구독자가 많은 유튜버들이 높은 조회 수를 얻을 수 있었던 알고리즘의 형식이었다면 최근에는 영상 단위의 알고리즘으로 바뀌면서, 예를 들면 1000만 구독자의 최근 평균 조회 수가 한 5만 회, 10만 회밖에 나오지 않는 채널들도 종종 존재하는데 오히려 한 5만 명, 10만 명의 구독자 채널의 조회 수가 100만 회가 넘는 이런 사례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발굴하는, 그러니까 누군가 지원을 했을 때 구독자 수나 과거의 영광만 보고 채택을 하지 않고 최근 활성 조회 수를 보고 채택을 한 다음에 그들에게 기회를 주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부분에 대해서 단계별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많은 지원을 해 달라는 게 아니고 처음에는 아주 작게 시작하다가 이게 진짜 성장할 것 같고 어느 정도 성공 궤도에 오른 IP에 대해서 조금 더 집중 투자를 하면 진짜 제대로 죽집게처럼 성장할 수 있는 IP만 골라서 지원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입니다.

○**진술인 오하영** 사실 부처 간의 업무조정체계를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미 법안에서도 일정 부분 담아내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가장 대표적으로 지금 이 법안이 담아내고 있는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표준계약서의 제정과 보급입니다.

그래서 이 법안 14조에 따르면 문체부장관이 공정위와 지금의 방미통위원회와 협의해서 뉴미디어영상콘텐츠 용역과 관련된 표준계약서를 마련하고 이 부분이 잘 보급될 수 있도록 일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마치 방송 프로그램 제작에 있어서도 외주제작 같은 것들이 있을 때 실질적인 문체부의 정책 수혜 대상인 제작사와 창작자가 이 표준계약서를 작성하되 이것에 대해서 방송사에서 잘 수용해서 작성될 수 있도록 유관부처의 장관들이 협조를 해야 된다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것처럼 이 법안 내용 자체가 잘 제정이 되어서 역할 분담이 있을 시에……

지금 콘텐츠 크리에이터 영역과 플랫폼사업자 간의 표준계약서 같은 것들이 마련되고 작성되는 과정에서 부침이 일어나지 않도록 플랫폼사업자라든지 통신사업자라고 얘기되어지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사업자에서 대상화하고 있는 또 다른 사업자가 이 표준계약서라는 물 그리고 공정한 유통환경 조성을 위한 문화 확산을 위해서 각자 맡고 있는 업무 역할 분담을 해서 조정하고 조율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오히려 이 법안에서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을 좀 더 구체화시켜서 역할 분담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으로 조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질의하겠습니다.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님, 나와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 임오경** TV에서나 영화관에서나 방영되는 것을 OTT를 통해서 우리가 어디에서나 편하게 볼 수 있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런데 OTT 드라마 ‘유미의 세포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소위원장 임오경** 특이하게도 OTT에 선공개되고 나중에 TV로 방영되는 작품들입니다. 이외에도 1분 미만으로 끝나는 쇼트폼 드라마를 포함하여 트렌드 및 기술 변화에 따라 다양한 융합영상콘텐츠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렇지요?

그렇다 보니까 현행 법체계로는 이러한 작품들은 모두 영비법상 온라인비디오물로만 분류되어 있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체계적인 지원, 실태조사, 표준계약서 도입 등이 모두 어려운 상황인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지금 디지털크리에이터 권리보호법을 보게 되면, 제가 확인해 보니까 과방위에서 이걸 심사를 앞두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법은 개인 창작자 중심의 관리체계, 사업자 준수사항 등을 규정하는 법으로 되어 있어요, 한번 확인해 봤더니. 그런데 오늘 논의되는 뉴미디어영상콘텐츠법은 저희가 표준계약서 플러스 제작·유통·플랫폼까지 포함한 산업 전체를 아우르는 법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김재현 진술인께 질의할게요.

크리에이터 개인을 지원하는 것만으로는 한계가 있어요. 그렇지요?

○진술인 김재현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산업 전체를 다루는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진술인은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김재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이 법이 제정될 경우 단순히 창작자 개인 지원을 넘어서 산업생태계 전체에서 어떤 변화가 가장 체감이 클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진술인 김재현 우선 잘 알려지지 않은, 그러니까 소수만 알고 있는 파편화된 팬덤이 점점 성장을 해서 대중적으로 그런 IP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이것을 보면서 표준계약서 전담기관, 제작·유통·지원 정책 등이 포함될 경우에 단순한 창작자 지원 중심의 법과 비교했을 때 산업 전반에 미치는 효과는 클 것으로 저는 봅니다.

두 분 진술인,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김재현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지금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은 글로벌플랫폼과 경쟁하는 영역인 만큼 더 이상 제도 공백 상태로 둘 수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서 법을 발의했습니다. 지금 적절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지 못한다면 우리 콘텐츠산업의 경쟁력 또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동의하시지요?

○진술인 김재현 동의합니다.

○진술인 오하영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중요한 것은 현장에 계신 분들도 그렇고 저희 위원님들도 지금 이렇게 확인을 할 때 완벽한 법이 아니라는 것은 저희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완벽한 법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변화한 산업을 담아낼 수 있는 법적 틀을 만드는 것이,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의 제정이 그 실질적인 해법이 될 수 있다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공청회가 큰 의미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부족한 부분들은 또 국회를 통해서 현장에 계신 분들이, 답은 현장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국회를 좀 더 많이 두드려 주시고 또 이 법안의 공청회 또 이 법안에 실려 있는 진흥법에 관련해서 부족한 부분들이 있으면 최성희 산업관님께서 소통을 통해서 저희 위원님들에게도 좀 더 접목을 시킬 수 있도록 그러한 부분들의 대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감사합니다.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금 이 법의 정의가 있잖아요. 디지털크리에이터 관련 법하고는 차이가 있지요?

○진술인 오하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이 법에서도 정의하고 있는 부분이 아직은 모호하지 않은가 이

렇게 생각되는데 뉴미디어영상콘텐츠도 핵심적으로 중요한 것은 IP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오하영 예.

○조계원 위원 그 IP를 결국은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생산하고 또 그걸 보호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 내기 위해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고자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진술인 오하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런 맥락에서 볼 때 앞으로도 다양한 뉴미디어콘텐츠는, 지금 현재 버추얼 캐릭터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것들이 나오고 있지만 앞으로도 무궁무진하게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을 위한 정의로서 이게 포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현재 이 진흥법에 서요?

○진술인 오하영 예, 문화기술융합콘텐츠라는 정의규정을 통해서 지금 현존하는 것 그리고 앞으로 등장할 신기술 융합영상콘텐츠에 대한 관할을 하고 있는 법으로 파악을 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앞으로 등장할 뉴미디어콘텐츠 부분에서도 이 법으로 규율할 수 있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건가요? 부족한 부분이 없다고 보시는 건가요?

○진술인 오하영 예, 지금으로서는 그렇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문화기술융합영상콘텐츠 이 개념 안에 다 담을 수 있다?

○진술인 오하영 예, 지금 일단 가장 산업진흥정책 대상으로 삼아야 할 인공지능 기반 이든 모션 캡처든 버추얼 휴먼 영역이든 이런 부분들을 포괄하고 있어서 지금 현재로서는 포괄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앞서 이기현 위원님이 얘기하셨지만 그러면 지금 현재 일부 정치적 채널이나 이런 데서도 이를 활용하고 있어요, 플랫폼을. 유튜브 플랫폼을 지금 가장 많이 활용을 하고 있고 또 많은 기존의 콘텐츠들도 쇼트폼처럼 요약된, 짧게 편집된 것들이지요.

그러면 이러한 부분들이 뉴미디어하고 구별이 되는 겁니까, 아니면 이쪽에 흡수가 되는 겁니까, 웹툰이나 기존의 콘텐츠들요?

○진술인 오하영 사실상 이게 단순히 길이 차이의 차원이라고 생각하면 흔히 말하는 롱폼, 미드폼, 쇼트폼, 그냥 유형의 하나일 뿐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도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것 같은데 쇼트폼 드라마 특화플랫폼들도 ‘쑈차’, ‘비글루’ 등등으로 나타나고 있고 아예 길이 자체가 장르가 되고 있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지원 차원에서의 힘이 더 불어넣어지면 이 영역에 대한 산업의 부흥에 보탬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의 롱폼이나 미드폼과 병렬적으로 놓여질 수도 있지만 지금 롱폼과 미드폼 같은 경우에는 긴 역사 안에서 지원사업체계가 잘 구축이 되어왔기 때문에 쇼트폼에 특화된 것들에 우리가 집중해 보자. 그런데 이것을 하기 위한 지원 근거법령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 아래에서 이 법안이 나타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점에서 본다면 또 그건 새로운 영역으로도 살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니까 제 말의 핵심은 뭐냐 하면 기존의 콘텐츠들, 기존에 만들어졌던 콘텐츠들이 소위 뉴미디어의 플랫폼들, 유튜브나 이런 것을 통해서 압축된 형식으로,

어쨌든 일종의 재편집 해 가지고 올라오잖아요?

○**진술인 오하영** 예.

○**조계원 위원** 그러면 이런 부분의 IP 규율은 기존 미디어콘텐츠법에서 규율하고 아까 얘기했던 쇼트폼이나 웹드라마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이걸 겨냥을 해서 만들어진 것들, 이 IP들은 뉴미디어콘텐츠 여기서 규율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냐,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동의하십니까?

○**진술인 오하영** 예,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귀한 시간을 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역대 저희가 공청회를 하는데 10분의 시간을 드리는데 10분 시간을 다 사용하지 않은 진술인들은 처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위원님들에게 잘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인사말씀 드립니다.

두 분 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진술인 김재현** 감사합니다.

○**진술인 오하영**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 공청회를 진행할 순서로 잠시 장내정리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리에서 잠깐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4시52분)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상정합니다.

먼저 바쁘신 중에도 공청회에 참석해 주신 진술인 여러분께 소위원회를 대표해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참석해 주신 진술인들을 가나다순으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개를 받은 진술인께서는 잠시 일어나셔서 인사하시고 앉아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박주석 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십니다.

○**진술인 박주석** 안녕하세요?

○**소위원장 임오경** 환영합니다.

다음은 천경우 중앙대학교 사진학과 교수십니다.

(인사)

환영합니다.

그리고 정부 측 관계자로는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에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청회의 진행절차에 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두 분 진술인께서 1인당 10분 이내로 진술하신 다음에 위원님들께서 질의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참고로 공청회는 국회법 제64조제4항에 따라 소위원회 회의로 진행되기 때문에 질의는 위원님들만 할 수 있으며 진술인 간 토론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진술인들로부터 발언을 차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주석 진술인부터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박주석 사진진흥법이 발의가 돼서 이렇게 진술까지 하게 된 자리를 만들어 주셔서 대단히 영광으로 생각하고 사진인의 한 사람으로서 고맙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현 의원님의 발의안하고 그다음에 이연희 의원님 발의안, 2개의 법안을 제가 검토를 해 봤고 자료집에 있습니다마는 이 두 법안 외의 기존에 사진을 다뤘던 기타 법안들, 현재 실행되고 있는 기타 법안들에 대해서도 다 검토를 해 봤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기존 법에서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사진 영역을 하나의 산업적 측면, 즉 인화 서비스를 한다든지 촬영 서비스를 한다든지 물품을 제작한다든지 하는 이런 산업적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법들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술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루고 있는 기존 법안들이 있었습니다. 문제는 이 2개의 법안이 다 지나치게 협소하게, 오늘날 시대에 있어서 사진이라고 하는 거대한 영역, 전 국민들의 일상적인 언어가 되고 있는 영역이라고 하는 사실을 간과하고 기존의 1980년대, 90년대에서나 통할 법한 사진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사진에 대해서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법안이 분명히 필요하고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발의된 사진진흥법안은 대단히 긍정적이고 사진인 전체가 굉장히 바라는 바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우선 사진 분야의 사회문화적 추세를 보면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사진이 이제는 특수한 몇몇 사진술, 사진기술을 습득한 전문가들에 의한 생산의 영역이 아니라 누구나 다 사진을 찍고 공유하는 전 국민 사진가 시대가 도래했다. 요즘 인스타그램이라든지 기타 SNS가 사진 이미지를 통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성립 자체가 안 될 정도로 이미 사진이 국민 일상생활에 넓게 퍼져 있다는 것이고요. 전체적으로 국민들의 사진과의 관계도 기존의 사진을 감상하고 사진을 보는 것에서 이제는 사진을 직접 찍고 이미지를 만드는 행위 중심의 시장, 그래서 사진예술에 관한 인구도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고 사진을 전문적으로 하겠다고 하는 아마추어 사진 인구도 수백만 명에 달하고 실제로 저희가 조사를 해 보면 지금 대한민국에서 1년에 열리는 사진공모전이 적게 추산해도 최소한 500개가 넘는 그런 전 국민이 다 관심을 갖는 영역이 됐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국가는 이런 국민들의 엄청난 문화적 행위, 문화적인 욕망이 분출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현행 어디에서도 이런 문화적 행위 자체를 규정하고 그걸 도와주고 수월성과 수준을 높이려는 어떤 법적 근거도 없다, 그래서 이번 사진 법령이 바로 그러한 법적 근거를 만드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더 나아가서는 아날로그 중심의 사진문화 시대에서 디지털 시대, 이제 AI가

지 등장하는 첨단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사실은 한국에 사진이 도입된 게 저희 학계에서는 1880년대 초반으로 보고 있는데요. 벌써 한 140년, 150년이라는 굉장히 긴 시간이 지났고 그사이에 수많은 사진인들의 문화적인 기여가 있었고 그들의 유산이 있었는데 그런 사진문화적 유산, 전통적인 유산을 보존·관리하고 승계시키는 어떤 장치도 현재 국내에는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 사진진흥법을 통해서 그러한 보존·승계 원칙 그다음에 제도가 만들어지기를 진정으로 바라고 있습니다.

법안에 대해서 제가 검토를 하면서 전문가로서 몇몇 용어에 대해서는 변경을 좀 요청드리려고 합니다.

나뉘 주신 자료 10쪽의 ‘법안 검토 후 제안 사항’에서, 박수현 의원님 발의안을 주로 검토를 했습니다마는 사진에 대한 규정, 사진작품에 대한 규정, 사진산업에 대한 규정, 기타 문화체육부장관의 의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진술을 해 났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법안이 최종 성안될 때 제 의견이 저희 사진계의 의견이니까, 요즘은 사진 같은 데도 다 그렇게 기술이 되고 있으니까 이런 점들이 좀 참조가 됐으면 좋겠다라고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다만 현재 발의된 법안은 사진의 언어로서의 일반성과 계승·발전시켜야 할 문화유산으로서의 내용이 포함돼 있지 않고 개인정보 보호와 이에 따른 벌칙 내용이 명확하게 명시돼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신설 검토를 통해서 사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개인정보의 보호, 벌칙 등에 대한 내용을 삽입해서 좀 더 정확하게 범조항을 만들 필요가 있겠다라는 제안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AI 시대 사진은 영상 창작의 리소스로서 전혀 새로운 역할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개념에 바탕을 둔 사진문화의 맥락을 재정리하고 새로운 사진문화 및 사진산업의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고 이를 통해서 사진문화유산의 보존과 관리, 새로운 사진 이미지 유통 플랫폼 형성의 계기를 마련하고 진흥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서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이 법안 설치가 사진문화가 안정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매개가 되고 사진인들이 지속가능한 사진문화 및 산업의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동력을 줄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사진문화에 대한 관심을 증대할 수가 있다고 봅니다.

AI 시대를 맞이하면서 사진의 문화적·산업적 환경이 엄청나게 변화하고 있는데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아주 핵심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하나 말씀드리면 현재 캐나다 같은 데는 어떤 제도를 시행하고 있냐면 여권이라든지 주민등록증이라든지 모든 공문서에 사진을 붙이게 돼 있는데…… AI가 나오면서 굉장히 합성된 이미지들이 많이 나오고 어떤 사람이든 자기 모습이 훨씬 더 잘 나오게 보이고 싶겠지요. 그러니까 AI를 통해서 얼굴을 다 고치는데 실제 인물하고 그 사진의 얼굴을 보면 전혀 다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개인정보 보호라는 차원에서도 앞으로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캐나다에서는 어떻게 하나면 협회 같은 데를 통해서, 사진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정확히 사진관에서 찍게 하고 사진관에서 찍었다라는 직인 같은 걸 뒤에다 사인을 해 줍니다. 물론 정부에 등록된 사진관들이겠지요. 그건 뭐냐면 내가 당신의 얼굴을 봤고 내가 이 사진을 통해서 당신 얼굴과 똑같은 사진을 만들어 줬다라는 걸 입증하는 일종의 증명제도 같은 것, 이미지 왜곡이 워낙 많으니까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일정하게 사진

산업도 어느 정도 활성화시킬 수 있고 그다음에 이미지 왜곡 문제, 가상 이미지 또는 AI 이미지에 따른 왜곡 문제 같은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도 사진진흥법령 같은 걸 통해서 그런 문제도 같이 정리를 좀 해 줬으면 참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 됐든 사진이 단순히 산업의 문제도 아니고 예술의 문제도 아니고 사진문화라고 하는 큰 틀에서 보자면 이 사진문화에 대한 전체적인 진흥방안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꼭 법안이 제정되면 감사하겠다는 말로 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진술인 감사합니다.

이어서 천경우 진술인 10분 이내로 진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술인 천경우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진작가이자 중앙대학교 사진학과에서 학생들을 지도하고 있는 천경우라고 합니다.

먼저 국회에서 사진진흥을 위한 법안을 마련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고 그리고 조금 늦은 감이 있지만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진술을 요약해서 말씀드리기 전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요, 올해가 우연히도 인류 최초로 사진이 촬영된 지 2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1826년에 처음 프랑스에서 니세포르 니엡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8시간의 노출시간을 통해서 최초의 사진이 만들어졌고 200년이 왔는데 사실은 다른 언어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매체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너무 당연하게 여기지만 아직도 문법이나 여러 가지 이해가 쉽게 되지 않는, 그러면서도 인류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굉장히 중요한 언어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200년이 되는 해에 이런 진흥법이 발의된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특별하게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제가 박수현 의원님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을 검토한 결과 실제 작품을 하는 사진작가의 입장에서 좀 말씀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미술진흥법 내용과 유사한 부분들이 상당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이런 법안들이 다른 문화 장르에서 대동소이한 비슷한 형식이 있는 거는 저도 인지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래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되지 않나 해서 제가 몇 가지 이의제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유사한 부분에 있어서의 실익이 좀 없다고 판단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 보면 제6조(실태조사)에 사진진흥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경우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창작 환경, 유통 환경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이 부분은 미술진흥법 6조(실태조사)에 있는 내용과 유사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등등이 있고요. 사진 분야에 별도로 필요한 항목이 있을 경우 미술진흥법 실태조사에 포함하면 되지 않을까라는 의문점을 갖게 됐고요.

또한 7조(사진 창작등의 지원)에 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제작·개발·유통을 촉진하기 위해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역시 이것도 미술진흥법 제7조(창작 지원)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나. 사진 분야를 별도로 창작 지

원을 하는 것이 실익이 얼마나 있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 봤습니다.

또한 미술진흥법 제12조에도 전문인력의 양성이 있는데요. 이것은 의원님이 발의하신 8조(전문인력의 양성)하고도 좀 연관이 있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일일이 다 언급할 필요는 없을 것 같지만 전반적으로 생각할 때……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10조(국제협력 및 해외진출의 지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것 또한 미술진흥법 11조(국제교류 및 해외진출 지원)를 통해서 추진하면 되지 않나 생각을 좀 해 봤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일정 부분을 좀 더 보완하고 몇 가지를 고려한다면 상당히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20세기 후반에 매체환경이 급격히 변하고 디지털 시대를 지나서 이제 AI 시대까지 왔는데요. 사진은 그야말로 대다수 전 국민이, 온 국민이 사용하는 언어가 됐습니다. 매일매일 글보다 사진을 찍고 보내고 그것을 통해서 소통을 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보게 되고 대한민국에 있지만 전 세계를 볼 수 있는데 대부분이 사진을 통해서 봅니다.

그렇다면 국민들의 사진에 대한 안목 그리고 문화 수준을 높여 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이라는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것이 일반 언어, 일상 언어가 되고 보통 국민이 소통하는 수단이 됐습니다. 그래서 사진 문화의 질적 제고와 사진예술의 생활화를 전제한다면 이런 정책 실행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공감을 끌어내는 방법으로 의미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전 국민에게 수준 높은 사진작품을 향유하기 위한 기회를 제공한다거나 또는 공공미술 형식을 통해서 국민 각자가 찍은 사진을 예술적으로 승화시켜서 문화적 주체성을 갖도록 만드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실행하는 제도 또는 사진을 통해서 국민 각자의 삶의 환경을 기록하고 비평하며 이를 공유하는 플랫폼 구축과 개방 등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 제안 몇 가지를 좀 정리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면 전 세계에 미술관이 있지만 사진을 미술관에 포함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진은 아직도 200년밖에 안 된, 다른 매체에 비하면 굉장히 젊은 시각 매체이자 언어인 것이지요. 그래서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각 나라마다 선진국에는 다 사진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국가 차원의 사진센터가 아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예를 들면 가칭 한국사진센터와 같은 것을 설립하고 운영하면 굉장히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디지털 이전 시대의 사진 문화산업 유산을 보존하는 것도 되게 중요하고 전승하기 위한 한국사진박물관의 설립과도 굉장히 연관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게티이미지처럼 한국에도 사진아카이브가 산업 영역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 될 것 같습니다. 더욱이 지금 AI를 통해서 사진의 정의가 변화하고 있고 우리가 실제 사진인지 아닌지조차 굉장히 혼돈스러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이런 것을 정의 내려 주고 또 법을 통해서 통제도 해 주고, 특히 청소년들이나 젊은 사람

들이 이것에 많은 영향을 받아서 삶의 가치관이 혼란스러운 것을 국가가 좀 이끌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런 것이 결국은 사진 생활, 사진 언어, 사진 문법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진을 소통의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은 전 국민적 차원의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교육 프로그램 및 교재 개발을 통해서 향상시킬 수 있고요. 특히 제 개인적으로는 초·중·고등학교 미술 교과서 교육 과정에 사진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통 사진을 배우는 곳은 전국에 많이 있고 아마 비정규 과정에서 가장 많은 교육을 받는 것이 사진 교육인 것 같습니다. 전 국민이 사진을 찍고 아마추어 과정도 있고 어떤 매체보다 진입장벽이 낮기 때문에 상당히 많이 배우는데요. 사진을 찍는 것을 배우지만 사진이 어떻게 읽히고 어떻게 소통되는지는 배우지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사진 언어를 교과 과정에 넣으면 좋겠다. 그것도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 이미지가 우리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받는지를 우리가 사실은 모르는 채 서로 보여 주고 또 찍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사진 이미지를 사실은 감당할 수 없는 정도의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이런 국민의 소양을 높여 주는 교육은 초·등교육부터 굉장히 중요하다고 느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런 것이 전 국민의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데 굉장히 효과적인 법안이 될 수도 있겠다 생각합니다.

제가 몇 가지 지적드린 그런 부분을 고려해 주신다면 정말 우리 동네도 기억하고 모든 개인의 일상도 기록하고, 동네 사진관이 단순히 사진을 찍어 주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 문화의 중심적인 역할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법안으로 이런 것을 보호해 주고 이끌어 주고 또 그런 것이 전 국민의 삶의 질에 기여할 수 있겠다고 저는 생각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천경우 진술인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진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순서입니다.

질의가 있으신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오늘 귀중한 의견을 주신 두 분 진술인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특히 박수현 의원안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귀한 의견을 주신 점에 대해서 매우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오늘 처리될 이후의 12번·13번 안건으로 이 법안이 상정돼 있기 때문에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져 보았습니다.

우선 박주석 교수님께서 법안 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시면서도 조문별로 구체적 수정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주요 논지는 박수현 법안이 사진의 개념을 협소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하시면서 사진 문화유산의 보존과 승계, 디지털 시대에 AI 이미지의 리소스로서의 사진 그리고 개인정보 보호 및 벌칙 등 시대 변화를 반영한 내용이 빠져 있다는 점을 지적해 주셨는데 정말 적극 공감되는 말씀으로 잘 들었습니다.

또한 영국, 프랑스, 미국, 캐나다 등 해외 사례를 들어서 사진전담기관—가칭 한국사진

센터라고 말씀하셨습니다만—설립과 사진 이미지 아카이브 그다음에 유통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셨고 조문별로는 사진의 정의에 일반 언어, 소통 수단으로서의 개념 추가, 사진 문화유산 보존 조항 신설, 저작권 조항 간소화, 사진 문화산업 용어 명확화 등을 제안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에 천경우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1826년에 최초의 사진이 촬영된 이후 200년이 지났다는 말씀에 정말 놀랐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른 매체에 비해서 매우 젊은 매체인 하나 인류 보편적 언어다라고 말씀하실 때 매우 큰 울림이 있는 말씀이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시면서도 이 법안이 효과적인 법안이 될 것이다라고 평가를 해 주신 점에 대해서는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박수현 의원안에 있는 조항이 기존의 미술진흥법의 내용과 중복되는 문제점들을 중심으로 비판적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제6조 실태조사, 제7조 창작 지원 그리고 제10조 지식재산권 보호, 제11조 국제협력 등은 미술진흥법을 통해 이미 추진이 가능하다고 지적하신 점에도 공감합니다.

그러시면서도 사진이 전 국민의 소통 언어이고 앞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더 나아가 인류 보편적 언어라고 말씀해 주신 그런 시대의 현실을 강조하셨고 이런 법안이 더욱 실질적 실익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가칭 한국사진센터의 설립, 사진 언어 교육 프로그램의 운영, 전 국민 사진 문화진흥 프로그램 개발 등 사진 교육의 특수성을 살린 조항을 구체화할 것을 제안하셨고 또 마지막으로 더욱 감동스러웠던 것은 초중고의 교육 과정에 이것을 포함해서 단순히 사진을 찍는 기술적 측면뿐만이 아니라 이것이 사진의 언어로 어떻게 서로의 삶에, 인간의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어려서부터 잘 교육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말씀에 너무 공감하게 되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사진은 이미 전 국민의 언어이고 스마트폰 하나면 누구나 사진작가가 되는 시대입니다.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 사진과 영상이 가장 강력한 소통의 수단이 된 시대에 정작 사진을 독립적인 문화예술 분야로 진흥하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은 명백한 제도적 공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진진흥법이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반복해 온 이유도 지금 두 진술인의 여러 가지 조언 이런 것들이 더 잘 담기기 위한 진통의 과정이었다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싶습니다.

따라서 이번만큼은 반드시 결실을 맺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두 분 말씀을 종합하면 사진진흥법은 필요하되 더 촘촘하고 실질적인 법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인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오늘 안건 12항·13항이 사진진흥법인데 이 법안 논의 과정에서 두 분 진술인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수정·보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손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 진보당 국회의원 손솔이고요.

교수님들이시고 전문가이시니까 궁금해서 그러는데 이 법안에서 다루고 있는 사진의

정의에는 ‘빛을 이용하여 표현하거나 기록’이잖아요. 그러면 이 정의에 따르면 디지털 처리를 하는 것들은 포함이 다 안 되는 겁니까?

○**진술인 박주석** 그러니까 영상문화를 사진문화라고 얘기를 할 때 가장 핵심은 후공정, 그러니까 인화지로, 필름으로 기록을 하느냐, 디지털로 기록을 하느냐 이런 것보다는 카메라라고 하는 것이 원근법을 완벽하게 구현하는 장치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즘은 카메라를 통한 이미지를 전체적으로 사진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런 사진이 움직이면 영상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손술 위원** 문화예술진흥법이나 미술진흥법이랑 겹치는 것은 많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래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따로 있으면 가장 좋은 게 무엇인지가 구체적으로 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이 법안에 보면 사진이 문화가 됐고 이미 전문가가 아니어도 사진을 찍고 이런 것들이 다 이해가 되는데, 그러니까 이 정책의 대상자가 그러면 일반 국민이냐, 사진작가냐, 사진 서비스업을 하는 사람들이냐 이게 다 섞여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들거든요, 너무 포괄적이어서요.

그래서 이 법안이 만들어지면 누구에게 무엇이 구체적으로 체감이 될 만한 일이 생기는 것인지 제가 아직 그 포인트를 잘 못 잡겠어서요, 검토하신 내용이 있으시니까 좀 얘기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주석** 기존 미술진흥법에서는 사진작가라고 흔히 불리우는, 예술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미술이라고 하는 제도적 틀 속에 들어간 사진의 영역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국립현대미술관도 그렇고 서울시립미술관도 그렇고 다 사진 부분을 따로 두고 사진을 컬렉션하고 전시를 하고 다 소화를 하고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 사진이라는 게 미술 영역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예를 들면 사진기자들이 생산한 수많은 이미지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 또 예를 들면 다큐멘터리 사진가들이 전 세계를 다니면서 기록한 사진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는 이런 영역, 그다음에 광고 사진가들이 광고라는 목적으로 사진을 찍었지만 나중에 큰 문화적 가치를 갖게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이 부분은 또 어떻게 할 것이냐, 그다음에 사진관이 주로 포트레이트(portrait)를 담당하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굉장히 우수한, 문화적 수월성이 큰 그런 영역들의 작품들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지금 현재 미술관 제도, 미술제도에서는 제가 말씀드린 이런 영역들이 전혀 다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진문화라고 하는 큰 영역의 5%, 10% 정도만 기존 법에서 다루고 있지 나머지는 전혀 다루고 있지 않다는 사실을 우선 제가 좀 강조를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미술만이 문화적인 유산이고 전통이 된다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수많은 다른 일반 영역들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저희가 사진계라는 테두리에서 보면 예술을 제외한 나머지 영역들이 너무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든지 보호하고 진흥할 법안이 필요하더라는 입장이고요.

또 하나는 그러면서도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일상의 언어인 한에는, 예를 들어서 국어진흥법이 있고 국어에 관한 수많은 연구와 보급과 언어적인 교육훈련 이런 것들이 다 있지 않습니까, 수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마찬가지로 사진도 이제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사진진흥법에 같이 있었으면 좋겠고 이게 저희가 법안을 필요

로 하는 목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술 위원** 예,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조계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천경우 진술인께 질의 좀 드리고 싶은데요.

박수현 위원님이 듣고서 해석하시는 부분하고 제가 듣고 해석하는 부분이 좀 차이가 있는지 몰라도 제가 듣기로는 여러 부분들이 미술진흥법을 통해서 이미 추진 가능한 내용이라는 지점들을 여러 조항에 걸쳐서 강조하셨거든요. 6조의 실태조사 부분, 7조의 창작 지원 부분, 10조의 지식재산권 보호 부분 그리고 11조의 국제협력 부분, 이것들이 다 미술진흥법으로 가능하고 별도의 실익이 없다 이런 형태로 지금 말씀하신 것 같고요.

또 9조 기술개발의 경우에도 개발환경은 거의 대기업들의 기술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이것도 법안의 실익이 크지 않다. 다만 전문인력 양성 부분에 있어서는 미술진흥법이 나 이쪽에서는 구체적 규정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필요하다, 제가 듣기로는 그렇게 읽히거든요.

그래서 확실하게 지금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 필요한지 아닌지, 그리고 필요하다면 어떤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밝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진술인 천경우** 제가 짓궂게 꼭 문제가 되는 것만을 찾은 것 같아서 좀 오해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도 오랫동안 현대미술과 사진 분야 그리고 교육 분야에서 종사해 왔습니다. 그래서 소위 현대미술에서 사진을 바라보는 시각 그다음에 사진에서 미술을 바라보는 시각 아니면 언어의 영역 또는 인류학에서 바라보는 사진의 시각들이 굉장히 다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200년이라는 게 굉장히 상징적인데 우리가 인류 역사를 보면 문자언어는 몇만 년이지요. 그래서 아직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탐구해 가는 과정인데 문제는 이게 항상 기술과 결부돼 있다 보니까 기술발전에 따라서 사진의 표현 방법이 바뀝니다. 그리고 AI가 등장하면서 더욱더 중요해지는 것이 기록된 사진이 과연 사실인지 진실인지 우리가 굉장히 혼란스러운 시대가 됐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창작의 영역에서는 사실 무한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표현 방법이 보장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미술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진국에서, 제가 유럽에서도 오래 살았고 다른 나라에 가 보면 굳이 왜 미술에 사진을 포함하지 않고 분리하느냐 하는 것은 사진이 갖고 있는 그런 기록적인 가치 그다음에 언어로서의 가치 그다음에 과학적인 가치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탐구되고 연구되고 그리고 그것은 공공의 영역에서 다뤄져야 되는 부분이라는 것이 공통적으로 인식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법안은 제가 당연히 필요 없다는 얘기는 아니고요. 그런데 이런 창작의 영역에서만은 조금 더, 단순히 예술창작이 아니라 국민들이 사진을 접했을 때 정말 양질의 사진을 접할 수 있게, 그것이 산업의 영역이든 창작의 영역이든 정부가 지원을 하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만약 정말 시장가치가 없다 하더라도 그것이 국민의 어떤 가치관이나 행복도에 기여를 한다면 그것을 유지시켜 주는 게 저는 정부의 역할이라고 개인적으로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면 당연히 필요한 법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자면 결국은 이것이 매일매일 소통하기 때문에 공동체

가 연결되는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사진이 너무 많이 생산되고, 우리 스마트폰 안에 지금 몇천 장의 사진이 있는데 아마 여러분들 댁에 가시면 평생 다 못 보실 겁니다. 그러니까 사진을 찍기는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얼마나 나한테 유의한지는 잘 모르기 때문에 이것을 법을 통해서 잘 컨트롤해 주고 국민들이 좋은 사진을 접하고 우리 어린이들도 어떨 때는 사진을 안 찍는 것도 우리가 가르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많이 찍고 많이 보관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것은 결국 내 에너지와 정신적인, 어떤 정서를 우리가 소비하는 일이기 때문에 집중하고 이런 사진을 통해서 굉장히 좋은 소통이 가능하다 이렇게 믿기 때문에 이 법안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이기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현 위원 법안을 여당 주도로 냈는데 관련 부처인 문체부와 기재부에서 신중검토 의견도 내고 그래서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기재부의 입장을 보면 이미 미술진흥법에 따라서 미술 분야의 한 장르로서 지원을 하고 있고 그 금액도 적지 않다, 그리고 지원하는 분야를 보면 전속작가 지원제 그다음 아카이브 구축, 플랫폼 지원—온라인 플랫폼이지요—그다음에 미술 해외출판 지원 그다음에 유통 지원까지 있습니다.

박주석 교수님께 좀 말씀드리고 싶은데, 이것 말고 이 법이 제정되고 나면 문체부에서 특별하게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더 추가해서 지원해야 할 분야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그 판단한 내용이 어떤 건지 좀 말씀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주석 아까 다른 위원님 질문에 대답한 거와 마찬가지로인데, 그러니까 기재부가 지금 말씀하시고 있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을 그냥말로 미술 영역에서 미술관 화랑 이런 미술제도, 경미한 이런 미술제도 속에서 다뤄지는 사진들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기재부의 그런 의견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사진을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런데 저희들이 생각하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미술로 규정할 수 있는 그런 협소한 의미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기자들이 찍어내는 수많은 이미지들, 사진기자들, 다큐멘터리 사진가들, 광고 사진가들이 일선에서 엄청난 노력을 하면서 새로운 문화가치를 만들어 내는 영역들이 있거든요. 그런 영역들에 대한 지원책이 전무하다라고 하는 생각에서 사진진흥법이 꼭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고.

만약의 경우 사진진흥법하고 미술진흥법하고 정 겹친다면 그런 작가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미술 영역에서 다뤄지고 있는 작가 영역은 오히려 사진진흥의 범위 속에서 배제시켜서 명확히 분류해 주고 나머지 영역들이 확실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제도를 만들어 나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기현 위원 국장님 와 계신데 국장님, 혹시 이 법 통과되고 나면 문체부에서 이 진흥법에 따라서 더 추가 지원할 수 있는 내용이 뭐가 있다고 판단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문화예술정책실장입니다.

○이기현 위원 아, 죄송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사진법안에 대해서 신중검토 의견을 과거에는 냈었습니다만 지금 두 진술인에게서 말씀 주신 것과 같이 창작으로서의 사진예술뿐만 아니라 사진문화 확산에 대한 부분

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 그러니까 미술진흥법에서 담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을 담아서 갈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부분을 박수현 의원님 안하고 이연희 의원님 안을 걱정하게 조합을 해서 대안을 좀 제안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안에 의하면 미술진흥법상에서 나온 창작자에 대한 지원 조항들은 거의 삭제를 하고요. 대신 새로운 기술발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다든지 또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부분들이라든지 또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보완해서 넣었습니다.

다만 천경우 교수님께서 말씀 주신 지원 방식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정책으로서 풀 수 있는 부분들이고 법에서는 근거만 가지고 있으면 더 많은, 열어 놓고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울러 사진센터, 기록센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지만 지금 사진 관련해서 제가 좀 확인을 해 본 결과 박물관, 미술관이 서울시립 사진미술관이 하나 공공으로 있고요. 그다음에 부산, 영월 그리고 많이 아시겠지만 사립 미술관으로서 서울에는 뮤지엄한미, 구 한미미술관 등 이런 미술관들도 있고 박물관들도 좀 있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박물관이나 미술관들이 각자 전시나 아카이빙이나 체험프로그램들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더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들도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원에 대한 여러 가지 방식들이나 이런 것들은 만약에 별도의 법안이 나오게 되면 좀 더 신경을 써서 그런 부분들을 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기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서울 서초갑의 조은희 위원입니다.

문체부 실장님께 좀 여쭙겠는데요.

사실 제정법은 일반법의 개정법안하고 좀 다른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 관련 제정안은 19대·20대·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어요. 특히 21대에는 우리 문체위는 통과됐지만 법사위에서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또 이렇게 왔어요. 왔는데 이번에는 문체부에서 굉장히 어정쩡한 입장인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박수현 위원님이나 이연희 위원님이 여당 실세여서 그러시는 건 아니겠지만……

○박수현 위원 여당 실수입니다.

(웃음소리)

○조은희 위원 여당 의원님들이 발의한 제정안이어서 입장이 어정쩡하신 건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여쭙볼 게 지금 미술진흥법의 개정으로도 할 수 있는 것이 굉장히 많고, 아까 얘기했던 기술발전 지원이라든가 개인정보 보호라든가 또 특히 한국사진센터나 이미지뱅크 설립이나 이런 문제는 기존 법 안에서도 개정을 통해서 또 문체부의 의지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는데 이것을 굳이 제정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 이유, 어떤 차이를 기대하기 때문에 그런 건지.

또 외국에는 따로 이런 게 없어요, 제가 찾아보니까. 진흥사업은 굉장히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단독 제정법을 통한 지원 사례는 없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우리 국회에서도 세 번 연속 문턱을 넘지 못했고 외국에도 없고 기존 법의 개정을 통해서도 지원할 수

있는 건데 굳이 이렇게 제정을 통해서 해야 되는 그 정확한 이유를 좀 실장님이 저한테 설득시켜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미술진흥법상에서도 개정을 통해서 그 부분들을 포섭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일리 있는 말씀이십니다. 그렇지만 미술진흥법 내에는 다양한 장르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진흥법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진과 관련된 부분이어서 이 조항들을 넣게 되면 그러면 조각은? 그리고 그러면 다른 영상미술은 어떻게 되는 거지라는 부분이 생길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아까 두 진술인께서 말씀 주셨듯이 과거에는 사실 전통적인 의미의 사진 그런 개념에 간혀 있었다면 현재 제안한 법안들 자체는 사진의 창작뿐만 아니라 사진 문화 확산이나 사진의 산업 생태계에 대한 부분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조항이고 이것을 미술진흥법 내에 포괄되는 부분들로 가져갈 거냐 아니면 별도로, 왜냐하면 다른 분야에, 분야에, 세부 분야에 균형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면 별도로 뽑아 가는 것들도 가능하다고 보여지고요. 이것은 입법기술적인 문제일 뿐이지 저희가 정책의 어떤 변화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판단하지는 않고요.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런 법안들이 없는데 왜 굳이 여기에서 이런 것들을 하느냐라고 말씀을 주신다면 이제 우리가 선진국의 다른 법제도를 굳이 따라갈 만큼 그렇게 돼 있지도 않고요. AI 관련 여러 가지 부분에서 제가 많이 들었던 것들도 우리가 선진적으로 법을 만들 수 있다, 선도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말씀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조은희 위원 추가질문 좀 드리겠어요.

말씀 잘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에 허점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 공청회 전에 우리가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공청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안이 미래로 가는 제정법이라면 지금 제기된 이 법안은 저는 과거의 법안이라고 생각해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장르 간 경계가 빠르게 해소되는, 허물어지는 시대인데 굳이 수정의견을, 앞으로 뉴미디어 산업 부분, AI 시대에 사진이 더 가야 된다는 것을 수정의견을 내시면서 이 법안을 굳이 제정해야 되는 것이……

이게 저는 미디어 영역도 AI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런데 지금 사진을 제정법을 통해서 수정의견을 내 가면서 제정을 하기 위한 제정법을 꼭 해야 되느냐 이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저희의 수정의견은 두 가지 제정안이 올라왔는데 이 제정안의 장점들을 모은 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별도로 수정했다라고 판단되지는 않고요.

사진은 순간을 포착하는 그런 예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지돼 있는 그 한 장면 내에 다양한 의미를 포함하는 그러한 독특한, 예술적인 미학을 추구하고 있는 부분들이기도 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통을 할 수 있는 언어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충분히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제정법을 만들 수 있는 가치도 있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조은희 위원 저는 미디어 융복합 흐름 속에서 오히려 사진, 미술 칸막이를 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발전 환경에 따른 통합적인 제정법이 오히려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입장입니다. 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음은 이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소희 위원입니다.

저도 실장님께 하나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 계속 조은희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주시는 했는데 문화예술 장르 관련해서 사실 사진법 말고도 지금 보면 무용진흥법안도 올라와 있고 뮤지컬산업 진흥과 관련된 법률안도 문화예술 관련 장르 법안으로 올라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이 법안들에 대해서는 지금 문체부의 계획이나 생각이 어떠한지, 이렇게 사진법도 통과시킬 것 같으면 장르 쪽에 있어 가지고 각각의 법안을 제정시킬 방향으로 가고 계신 건지 지금 현재 문체부의 생각이 좀 궁금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저희가 사실 장르가 융합되는 부분들도 분명히 있고 또 개별 장르인데 그 부분을 좀 특화적으로 지원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분야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저희가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률적으로 그러한 부분들을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법안들 내용들이나 규정 내용들이나 이런 것들이 정책을 펴 나가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것인가 아닌가를 판단을 해서 개별적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런데 아까 실장님이 사진의 가치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사실 무용이나 뮤지컬도 그와 합당한 정도의 가치는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실장님의 말씀대로면 무용이나 뮤지컬도 똑같이 제정법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해야 말씀의 앞뒤가 맞다고 저는 보여지기는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리고 두 분 교수님께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주석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에서도 그렇고 검토자료에서도 보면 제7조의 창작 지원 조항에 대해서 미술진흥법으로도 충분히 실행 가능하여 중복 가능성이 있어서 삭제가 필요하다고 의견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해당 조항 말고도 이 법안 안에 포함된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는 중복 가능성이 없다고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 또 유사하게 중복되거나 조정이 필요한 조항들이 있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중복이 됐을 경우에 혼선이나 비효율을 초래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러한 방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천경우 교수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교수님 자료집이나 아까 말씀 주신 바로는 아까도 여기 위원님들께서 말씀 주셨지만 사실 중복이 많이 된다고 말씀을 주셔서 가지고 저는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 계신 건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으로는 법안에 반대는 하지 않으신다고 하셨는데 사실 이렇게까지 많이 중복이 되는데 왜 이 법이 생겨야 되는지 한 번 더 차별성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좋겠고.

그리고 저는 교수님께서 주신 이런 정책, 사진센터, 교육 프로그램도 아주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 자체도 법적으로 어떻게 보완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사실 이게 법이 있어야 지속가능성이나 이런 것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말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진술인 박주석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사진 제정법을 처음 봤을 때 아까 말씀드렸지만 기존의 미술 영역 속에서 다루지는 사진하고는 관계없이 미술 영역이 아닌 사진의 다양한 문화적 영역들에 관련된 법이다라고 저는 인식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기존의 사진 창작 지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미술진흥법에서 다루고 있고 또 미술계에서 흔히 쓰는 일종의 정책적인 제도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진 쪽에서는 좀 이 성격이 다르고 또 사진의 독자성이 있는데 굳이 미술 쪽 제도를 사진 쪽에서 똑같이 해야 될 필요가 있느냐. 왜냐하면 작가라고 하는 개념하고는 일반 기능인 또는 문화의 전수자 이런 개념하고는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사진 분야 속에서도 미술로서의 사진을 하시는 분들은 미술진흥법에 가서 지원받으시고 그 외의 나머지 거대한 영역이면서도 소외된 이런 분들을 위한 법안이 필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굳이 그렇게…… 그래서 나중에 작가들이 사진진흥법 가셔도 지원을 받아 보고 미술진흥법 가셔도 지원을 받아 보고 이런 식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는 사태를 미연에 방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의견을 냈습니다.

○진술인 천경우 질문 감사드립니다.

미술진흥법에 있는 실례를 보면 사진이 한 카테고리 안에 들어 있습니다. 회화, 조각, 영상 그다음에 사진이 있는데 실효적으로 보면 여러 분야를 그 안에서 다 수용하다 보니까 순수한 예술을 창작하는 분에게만 해당이 되고 실제로 그런 분은 회화나 조각에 비해서는 굉장히 소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역사도 짧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경이 훨씬 더 오랜 다른 예술 장르에서보다요.

그런데 사진의 창작이라고 하면 반드시 예술로만 생각을 하는데 순수한 예술로서의 창작이 있지만 기록을 하면서 해석하면서 하는 창작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다른 순수예술 분야하고 다르게 산업하고 직결됩니다. 그래서 한 번 만들어 낸 이미지는 그 이미지의 저작권을 통해서 아니면 재생산을 통해서 하다못해 인스타그램의 작은 포스팅 하나도 하나의 이미지가 다른 어떤 브랜딩이나 마케팅하고 연결돼서 굉장히 퍼져 나가는 데 이러한 것이 어떤 법적 기준이나 이런 것을 창작하는 사람들, 유통하는 사람들에 대한 보상 또는 보호가 없다 보니까 해외에 있는 그런 대자본이 이런 것을 독점하기도 하고 한국 작가들이 이미지 창작한 것을 보호해 주기도 어려운 상황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도 이것을 무조건 안 좋다, 좋다고 이렇게 이분법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는 예술 영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수용하고 그 외의, 아까 말씀드렸지만 사진이 아직도 계속 변화하고 있고 이것은 계속 변화해 가는데……

제가 좀 길어지지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외국에서 항상 출판을 하거나 뭔가를 할 때 한국 사진은 뭐가 다른가 물어보면 사진은 수입이 됐다고들 생각합니다. 서양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포토그래피가. 그런데 포토그래피의 어원이 ‘photos graphos’, 빛을 옮긴다는 뜻이거든요. 물리적인데, 혹시 여기 위원님들 사진의 어원이 뭘지 아십니까, 사진이? 베낄 사(寫) 자에 참 진(眞) 자입니

다. 이게 고려시대 때부터 쓰던 언어인데 굉장히 이것에 대해서 신비하게 생각합니다. 한국 사람들은 사진을 그냥 물리적인 재현이 아니라 뭔가 진실을 옮긴다라고 인식하고 있구나.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 때마다 굉장히 감동을 하고 한국 사진에 대해서 알고 싶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어쩌면 세계 기준을 마련하는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게 굉장히 유용하고 효용성이 있는 인류보편적인 거지만 반면에 굉장히 위험하기도 합니다.

이것을 모르고 우리가 접했을 때 양질의 사진을 생산하는 그런 산업에 대한 보호, 창작자에 대한 보호 그리고 이것을 국민들이 그 양질을 수용할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기관이나 제도가 없으면 그야말로 정말 범람하는 사진 속에 혼란이 지속될 수 있다고 되게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는 굉장히 정교하고 견고한 법을 통해서 온 국민이 이런 사진을 향유하고 또 언어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기초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저도 한말씀드리겠습니다.

미술과 사진의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진술인 박주석 그러니까 시각언어라고 하는 측면에서 시각언어를 가지고 미술, 그러니까 창작행위를 하고 창작행위를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미술은 사실은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한테 감동을 주고 누군가와 소통하고 교감하는 그런 영역을 우리가 미술이라고 흔히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단어부터 따지기 시작하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아트인데 어떨 때는 예술이라 그랬다가 어떨 때는 미술이라 그랬다가 이게 다 서양에서 수입된 언어다 보니까 이런 사달이 벌어지기는 합니다마는 어찌 됐든 미술이라고 하는 것은 근본적으로 전통적인 회화, 조각 중심의 카테고리였고 거기에 새로운 미디어가 미술 시장에 등장을 하니까 사진도 끌어들이고 영상도 끌어들이고 다른 미디어도 끌어들이고 가지고 미술을 끊임없이 확장시키려고 하는 미술계 사람들의 노력 속에서 벌어진 현상이라고 저희는 보고요.

사진이라고 하는 것은 원래 태어날 때부터 무슨 미술이라고 하는 그런 영역이 아니라 그야말로 누구나 이미지를 고정시켜서 그걸 통해서 뭔가 커뮤니케이션의 새로운 수단으로 삼기 위해서 만들어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진 발명자들이 왜 당신은 사진을 발명했냐라고 보면 언어라는 개념, 사진은 새로운 언어로서 새로운 문화의 소통 기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어 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설명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아까 말씀드린, 예를 들어서 미국의 모마가 있습니다. 모마 다 아실 거라고 봅니다. 모마를……

○소위원장 임오경 너무 어렵게 표현하시는 것 같아서요. 제가 질문한 것은 참 간단했어요.

역사를 본다고 하면 미술도 우리는 기록물이라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과거를 본다고 하면. 그렇잖아요. 그런데 기록물로 사진을 통해서 현상에 대해서 기록을 남겨야 되는데 우리가 글을 만들기 전에는 그림으로 해서, 벽화도, 지금 문화재가 다 있는 것처럼 그 시대의 그림을 보고 몇 년도 거라는 걸 다 파악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기록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변화되면서 미술은 창의성이 들어간 예술이라고 지금은 생각이 변한 거지요. 지금은 한글이 생기고 글로 역사에 기록물을 다 남기게 되었으니까. 그런데 제 핸드폰을 보게 되면 제 핸드폰 안에는 사진의 기록물,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기술이 변화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다는 표현을 할 수 있고 같은 방향으로 보면 같은 방향으로도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이것은 다르게 보인다. 그렇지 않습니까?

한글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우리가 그 상황을 그림을 통해서 재현을 했고 그래서 역사의 기록물이 되었고 지금은 사진을 통해서 기록물이 만들어지지 않나. 모르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미지 표현예술이라고도 하지만 사진은 저는 이제 기록물이라고 봅니다. 그렇잖아요.

○진술인 박주석 일단 동의하고요, 당연히 동의하고요.

문제는 기록 생산이 과거에는 소수에 의해서 독점이 됐습니다. 제가 기록정보과학대학원의 교수로 있습니다마는 기록은 과거에는요, 정말 왜 역사가 승자의 기록이라고 얘기 하나면 그 기록을 생산할 능력을 갖고 있고 그 기록을 보존할 능력을 갖고 있는 자만이 실질적으로 기록을 생산을 했고 유지시켰어요.

그런데 사진이라고 하는 게 테크닉 발전의 수혜를 받아 가지고 이제는 누구나 기록을 할 수 있는 시대, 특별한 권력 계층에 있지 않아도 기록을 생산하고 기록을 소비하고 기록을 전송할 수 있는 시대가 됐다는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야말로 누구나 사용하는 언어가 됐다 그런 차원에서 별도의 국어진흥법이 있듯이 사진진흥법도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저는 그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미술은 현실을 그대로 재현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여기에 추상적이고 과장·왜곡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미술에는. 그렇잖아요. 그런데 사진은 기본적으로 왜곡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진실만을, 사진을 찍는 것은 진실만을 포착해서 사진을 찍는 거니까 시대가 변하면서 다름이라는 것이 저희에게 와닿게 되는 건데……

오늘 많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최근에는 생성형 AI 확산으로 사진과 이미지의 경계, 진위성 문제, 저작권 및 데이터 활용 문제 등 새로운 쟁점이 빠르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법이 한 번 제정되면 장기간 적용되는 만큼 AI·디지털 환경과 미디어 융복합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반드시 보완되어야 한다고 보시는지 그리고 지금 법안 수준으로도 실제 정책이 작동할 수 있다고 보시는지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진술인 박주석 제가 법학 공부를 한 사람도 아니고 법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대답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법안이 기본적으로 법적, 그러니까 사진 부분을 정책적인 문제로 다뤄 가지고 정부 차원에서 컨트롤하고 진흥을 하고 보안을 하고 국민의 문화적 수월성을 이끌어 내는 그런 기초 제도로서 작동을 한다고 생각하면 이번 법안은 큰 문제는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정책 당국자들이 나중에 이 법안을 근거로 정책 실행을 할 때 얼마나 창의적으로 할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저의 의견은 이게 좀 두리뭉실하게 돼 있으니까 법안에 정부가 실행해야 될 사항들을 좀 구체적으로 담아 주면 훨씬 더 실효성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변화되는 패러다임에 의해서 저희가 완결체를 만들어 가는 게 법이라고 보는데 제가 AI에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것은 아까 천경우 진술인께서 말씀하실 때 AI로 인해서 사진이 변화되고 왜곡되는 게 많다 보니까 국가에서 지정한 사진관에서 사진을 찍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잖아요. 저는 그 부분에서 동의할 수 없었던 게 세상의 기술이, 테크놀로지가 변하고 있는데 집에서도 사진을 찍어서 인쇄를 하면 증명사진을 다 뽑을 수 있게, 저희가 돈을 들여서 제가 비용을 지출해서 그러한 물품을 구입해서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고 사무실에서도 편하게 할 수 있는데 왜 나라가 지정한 데 가서 사진을 찍어서 또 그렇게 지출을 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서 아까 설명을……

○진술인 박주석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렸는데 캐나다 사례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캐나다에서 왜 그렇게 하는지 캐나다의 시행령의 이유를 제가 들어 보니까 아이덴티티에 대한 왜곡 가능성을 최대한 줄여 보자. 그래서 전문가 집단으로 하여금 그 아이덴티티를 확정해 줄 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그런 취지로 캐나다에서 그 시행령이 제안이 됐고 캐나다 정부가 그걸 받아들여서 지금 시행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창작, 생산 이런 측면에서 무언가 법적 제약을 거는 것은 저도 안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이덴티티를 확정하고 국가 시스템이 전체적으로 작동하는 데 있어서 아이덴티티를 확정하는 시스템에 만약 왜곡이 생기고, 예를 들어서 누가 신분증을 위조한다든지 누군가가 경력증명을 위조한다든지, 경력증명서를 위조하면 나중에 큰 문제가 되듯이 자신의 얼굴을 위조해 버리고 자신의 얼굴을 바꾸고 그래서 나중에 그걸 자유롭게, 기술이 가능하게 하니까요. 그래 가지고 나중에 그게 문제를 일으키게 되면 더 큰 사회적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제가 챗GPT에다 한번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한 줄로 정리해 줍니다. 미술은 창조 중심이고 사진은 기록 중심 예술이다.

오늘 진술인들의 말씀을 너무나 잘 경청했습니다.

천경우 진술인.

○진술인 천경우 챗GPT가 상당히 위험한데요. 사진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그렇게 단순하다고 생각하면 저희가 삼십 년 동안 이것 연구하고 있지 않을 텐데요.

이 말씀 하나 드릴게요.

사진도 그냥 시각예술이니까 무조건 예술이 된다 예술이 안 된다 그렇게 이분법적인 것이 아니라 학교에서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대학에서 우리가 커리큘럼 만들 때 실용사진과 예술사진을 구별합니다. 예술사진은 실용의 목적이 있거나 영리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감수성을 표현하고 그 감수성을 우리가 느끼는 것, 거기에는 뭔가 생산성이나 이런 것이 기록될 수가 없지요. 실용사진에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도 있고 과학도 있고 기록도 있고요 그다음에 수많은 연구 분야가 있습니다. 그 분야는 사실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요. 그리고 창작도 예술적 창작이 있고 실용적 창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단순하게 이분법적으로 할 수 없지만 제가 이런 질문들을 받을 때마다 사진이 예술이냐 아니냐, 예술로 봐야 되냐 저는 거기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반문을 합니다. 사진을 언어라고 표현한다면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감수성을 표현할 것인지 아니면 기록을 하거나 정말 첨예한 논리적인 뭔가를 기록할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

지금 사진의 정의가 전 세계적으로 혼란스러운 시기입니다. 어쩌면 우리 한국을 바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작년에 60주년 심포지엄을 했는데 사진의 정의, 지금 카메라가 없는 사진하고 렌즈가 없는 사진이 나오기 때문에 저는 한국에서 이 법안을 통해서 사진의 정의부터 내리는 것도 굉장히 시급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들이 안 계시면 이상으로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공청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진술인들께서 주신 의견과 토론 내용은 우리 소위원회에서 법률안을 심사하는 데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귀한 시간 내 주신 진술인 두 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법안 심사에 들어가기에 앞서 장내 정리 시간을 갖기 위해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 뒤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0분 회의중지)

(16시08분 계속개의)

○소위원장 임오경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법안심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안전심의 절차를 간단히 말씀드리면 각 안전별로 수석전문위원의 설명을 들은 후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의결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석하고 계신 분이 답변하는 경우 원활한 회의 진행과 속기록 작성을 위하여 소속, 직위, 성명을 먼저 밝힌 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 대상 안전의 명칭 및 순서는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089)
4.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기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458)
5.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910)
6.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임오경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063)
7.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학영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6368)
8.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조은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7656)
9.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재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0556)
10.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민형배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5142)
11.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김승수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54)
12.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09703)
13.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이연희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2286)
14.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박정하 의원·임오경 의원 대표발의)

의)(의안번호 2207382)

1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임이자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536)

16.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박수현 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2213603)
(16시09분)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6항까지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4건의 법률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3조제5호 및 제14조제2항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 등이 공무상 작성하거나 시행하는 문서인 공문서 등의 범위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이는 누리집의 게시물이 국민들이 이해하기 어려운 전문용어 또는 비문 등이 사용되고 있는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누리집의 게시물은 전자문서의 한 형태로 볼 수 있고 현행법 제3조제5호에서도 공문서 등의 정의에 전자문서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3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전자문서의 개념에 누리집의 게시물이 포함되는 내용으로 조문을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개정안은 누리집의 게시물을 공문서의 개념에 포함시켜 국민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국어 사용을 확대하고 나아가 국민의 알권리 보장을 강화하려는 것으로 입법 취지에 동의합니다.

다만 누리집의 게시물은 본질적으로 전자문서의 하위 형태인 점을 고려할 때 병렬로 규정하기보다는 누리집의 게시물이 전자문서에 포함되는 내용으로 자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국어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지요?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5조의2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으로 하여금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을 추진하도록 함과 아울러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에 관한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성이 있는 기관을 지정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와 유사한 입법례로는 해양수산발전 기본법이 있으며 개정안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인 국제개발협력은 현행 국제문화교류 진흥법에서는 사용하지 아니하는 용어로 법체계 및 용어의 통일성 제고를 위하여 국제개발협력에 대하여 정의 규정을 두고 있는 근거 법률인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 해당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국무조정실은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의 독립적인 전문기관 법제화는 국제개발협력 추진체계의 분절화 및 중복 문제를 고조시킬 수 있으므로 개별법이 아닌 국제개발협력기본법 체계 안에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집중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외교부 또한 국제개발협력 사업을 실시하는 시행기관이 전문기관을 두도록 하는 등 별도의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것은 국제개발협력기본법과의 중복 입법에 해당하고 현행법 제12조는 국제문화교류 진흥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 업무 관련 전문기관을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추가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바 이를 고려하여 4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문체부와 협의하여 수정의견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문화분야 국제개발협력의 체계적인 추진을 위한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다만 외교부와 국조실에서 국제개발협력의 통합적 추진을 위해 개별법상 별도 전담기관 지정을 내용으로 하는 제2항의 삭제를 요청해 부처 간 합의안을 마련하였으므로 해당 내용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한편 입법기술적인 측면에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상 국제개발협력에 대한 정의 규정을 인용하는 자구 수정도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계원 위원 외교부하고 협력이 다 된 겁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됐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수정 조문대로 넘어가시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국제문화교류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6조제4항 및 제33조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대중문화예술기획업의 등록요건 준수 여부를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점검 결과 대중문화예술기획

업의 등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에는 그 등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준수를 상시적으로 유도함으로써 대중문화 예술인 및 관련 종사자의 권익 보호와 산업 전반의 신뢰도를 제고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참고로 아래 각주 1번에 정리되어 있는 현행법 제18조 및 시행령 제5조에 따라 2년마다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실태조사는 대중문화예술산업의 공정한 거래질서의 확립을 위한 관련 계약에 대한 실태조사에 목적을 두고 있는바 개정안에서 규정하고자 하는 등록요건 준수 여부에 대한 정기 점검과는 목적과 대상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개정안은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의 등록요건 준수를 상시 유도하기 위한 것으로 전부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등록된 대중문화예술기획업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총 몇 개가 될까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6000개가 넘습니다.

○손솔 위원 6000?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실태조사를 실행하는 데 들어가는 시간이나 비용은 지금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국장으로 하여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콘텐츠미디어산업관입니다.

저희가 2년마다 실태조사를 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비용이나 이런 것들은 제가 확인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손솔 위원 이게 2년에서 1년 단위로 변경되거나 하는 데에 큰 어려움이나 무리는 없는 상황인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조계원 위원 아니, 이것은 실태조사하고 별개라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손솔 위원 그러면 별개로……

○문화체육관광부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예, 등록 관련된 것은 별개입니다.

○손솔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 개정안의 취지에는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차관님, 현장에 부담만 가중하는 규제가 아니고 부실 기획자들을 실효적으로 걸러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적극적인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시행령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동그라미 1번 부분입니다.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의 임오경 의원안 제21조제1항과 관련하여 현행법은 온라인 자료의 경우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된 자료만을 납본 대상으로 한정하고 있어 디지털 형식으로 제작·유통되는 공공간행물, 학위논문, 웹툰·웹소설 등이 납본 대상에서 제외되는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2026년 이후 웹툰·웹소설 등 연재형 전자출판물에 대해 국제표준자료번호가 부여되지 않을 예정이어서 온라인 자료 납본 대상은 지금보다 축소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임오경 의원안은 온라인 자료의 납본 대상을 확대함으로써 디지털 환경 변화에 대응하여 온라인 자료의 수집 및 보존 기능을 강화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 동그라미 2번 중간 부분입니다.

납본 거부 및 납본 부수 조정에 관한 사항입니다.

최근 생성형 인공지능의 확산으로 인해 자동으로 대량 생산되는 디지털 콘텐츠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모든 도서관 자료를 일률적으로 납본받을 경우 납본 보상금의 과다지출, 보존 공간 부족 등과 같은 행정적·재정적 부담이 발생할 우려가 높습니다. 그러나 현행 도서관법과 시행령에는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납본 부수를 줄일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없어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은 내부 규정인 국립중앙도서관 자료 납본 수집 규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납본받지 않을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정하여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납본 거부 또는 부수 조정에 대한 법적 근거의 명확성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7페이지 되겠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납본 보상 시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의무화하고 납본을 받지 아니하거나 납본 부수를 조정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신설함과 아울러 납본 및 보상 기준을 마련하고 그 기준의 주기적인 조정에 관한 사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납본 제도의 합리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고 납본 제도의 악용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9페이지부터 정리되어 있는 수정의견은 문체부와 저희 전문위원실에서 긴밀히 협의하여 수정의견안을 만들어 보았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연번 3번입니다.

이학영 의원안과 조은희 의원안 제22조의2는 납본제도의 공정하고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도서관 자료 및 온라인 자료와 관련하여 납본 및 수집 대상 자료의 선정 및 보상의 적정성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0페이지입니다.

두 개정안은 납본 거부와 납본 부수 조정을 위하여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있으므로 현재 대통령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법률에 상향하여 규정하려는 것은 타당한 입법으로 판단됩니다.

21페이지입니다.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위원 중심으로 구성될 가능성이 높고 공정하고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조항을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25페이지 연번 4번입니다.

조은희 의원안 제22조의3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납본 보상을 받은 자가 타인의 저작권 침해 등 위법·부당한 방법 등으로 보상을 받은 경우 보상금을 환수하도록 하고 과거 2년간 보상 환수 조치를 받은 횟수가 3회 이상이고 반환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인 자의 명단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27페이지 되겠습니다.

조은희 의원안 제1항은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른 부정청구 등에 포함되지 않는 사항으로 공공재정환수법보다 보상금에 대한 환수의 범위를 넓힌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습니다.

아울러 조은희 의원안 제2항은 명단 공표 규정을 두고 있는데 개정안은 명단 공표의 조건으로 보상금 반환 금액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습니다.

28페이지입니다.

이러한 제재적 성격의 명단 공표는 공표 대상이 되는 자의 인격권과 사생활의 자유를 제한하는 측면이 있고 기본권 제한과 관련한 중요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과 유사 입법례를 감안하여 반환 금액의 기준을 법률에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에 대하여 논의해 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31페이지 연번 5번, 부칙입니다.

세 건의 개정안은 공통적으로 시행일을 공포 후 6개월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한편 현행법 제21조에 따라 도서관 자료 또는 온라인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한 자는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납본을 하여야 하는데 개정안 시행 이전에 도서관 자료를 발행 또는 제작하였으나 납본 기한인 30일이 도과하지 아니해서 개정안 시행 이후에 납본을 하는 경우 현행법의 규정에 따라서 납본을 하여야 하는지, 제21조의 개정 규정에 따라서 납본을 하여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 측면이 있으며 이학영 의원안과 조은희 의원안 제22조의2에 따라 법적 근거가 신설되는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는 현행법 시행령에 근거하여 현재 구성·운영되고 있는 위원회로서 위원회의 근거 법률이 변경되는 경우 두 위원회에 법적 동일성을 부여할 필요가 있으므로 32페이지 수정의견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납본에 관한 적용례와 도서관자료심의위원회에 관한 경과조치를 부칙에 추가적으로 신설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납본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임오경·이학영·조은희 의원님께서 개정안을 발의해 주셨습니다. 국가 지식자원을 보다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납본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합니다. 개정안 중 유사·중복되는 조항은 통합 조정이 필요하여 전문위원실과 협의를 거쳐 안을 마련하였으며 수정안이 반영되기를 희망합니다.

다만 조은희 의원님께서 발의해 주신 제22조의3(보상금 환수 등)은 그 취지에는 공감하나 저작권 침해, 무단 복제 등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받은 보상은 면밀히 모니터링한 후 환수 규정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판단하여 지금 저희들이 별도 배포해 드린 수정안으로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별도 배포한 게 어디 있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잠깐만, 자료 배포 좀 해 주십시오. 수정 보완한 거 일단 자료를 한번 보시고.

조은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매년 온라인 납본 건수가 2만 5000건이고 앞으로 AI 출판품은 더 많아질 건데 사전에 걸러 낼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후 제재의 수단이 필요한데 지금 수정의견을 주셨어요. 주셨는데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9000권을 AI가 ‘딸깍 출판’ 했다는 출판사가 사후적으로 드러났잖아요. 그런데 보상금 환수조치 명단 공포 조항 저는 넣었지만 부처에서 수정의견을 주셔서 저는 만족하지 않지만 이 정도로 가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면서도 제가 지적은 합니다.

뭐냐 하면 이렇게 납본 보상제도를 반복 악용하는 경우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를 할 건지, 벌칙이든 행정처분이 가능해야 되는 거 아닌지…… 지금 보면 같은 법 8조에 따라 조치하여야 된다. 그런데 이게 모니터링 제도를 통해서 개선해 나가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조은희 위원 그런데 모니터링해서 개선을 제대로 어떻게 하겠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러니까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납본을 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고요, 위원님. 그다음에……

○조은희 위원 납본 안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이 사람 딸깍 9000부 이렇게 해서 사전에 거르지 못하고 나중에 밝혀지는 경우에……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다 납본을 받은 후 밝혀지는 경우에?

○조은희 위원 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때는 딸깍 해서 그게 저작권 침해가 되거나 그러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 저작권법상 물수가 가능합니다, 그 부당이득에 대해서. 그리고 500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을 내릴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리고 위원님……

○조은희 위원 그러면 이때까지 그렇게 해서 물수하고 한 사례가 있나요? 저작권 침해해서 그렇다고 한 사례가 있나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5년 이하, 5000만 원’은 최근에 개정해서 좀 높은 거고요. 그 전에는 ‘3년 이하, 3000만 원’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조은희 위원 사례가 있냐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부분은 사례가 있을 겁니다. 저작권 침해가……

○조은희 위원 저는 별로 없는 걸로 아는데 정확히 파악해서……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뒤에서 파악해서 주십시오, 다른 분 논의할 동안.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래서 모니터링 통해서 하겠다 하는 게 실효성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제가 걱정돼서 지금 지적해 드리고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 궁금한 겁니다. 찾아서 나중에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소희 위원 저도 중복되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사실은 지금까지 환수 조치가 된 경우가 있는지, 그 전에 기 납품된 도서 중에서 분명히 보존 가치가 없는 도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실제로 그거에 대한 파악을 하고 계시는지가 우선 궁금하긴 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 환수 사례에 대해서는 제가 조 위원님께 말씀드린 것처럼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고요, 저작권법상.

○이소희 위원 환수까지 가지 않더라도 실제로 저작권이 위반됐다거나 아니면 이 작품 자체가 가치가 없다라고 판별된 도서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그거에 대한 통계나 자료를 취합하고 계시는지가 궁금하거든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설희 도서관정책기획단 조설희 과장입니다.

지금 납본된 자료에 대해서 저희가 제적을 하거나 이용 제한을 하는 경우들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법원에서 대중에게 공포를 금지하는 그런 판결이 나오면 그 자료에 대해서는 제적 처리를 하거나 별도로 보관해서 이용자가 접근할 수 없게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청소년보호위원회나 간행물윤리위원회 판정에 따라서 자료들을 별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관리하고 있으면 그 수치나 이런 것들도 통계를……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설희 예, 통계 가지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설희 예, 알겠습니다.

○이소희 위원 그러면 그렇게 또 법원에서 나온 것이 환수 조치가 됐는지……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설희 환수 조치까지는 현재 시행한 적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소희 위원 왜 안 하시는 건가요?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설희 일단 도서관에서는 사실 수집하는 데 그 동안에 많이 중점을 두고 있었고 환수까지는 저희가 많이 신경을 쓰지 못했던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법이 아니라 지금 차관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작권법이나 다른 법령에 의해서 제재 조치들이 가해진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부정수급이나 이런 부분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사례들을 저희

가 조금 더 모아서 이게 입법으로까지 필요하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은 사후 추진하는 것으로 그렇게 저희끼리 지금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차관님, 제가 걱정하는 건요 이제 앞으로도 계속 더 많을 거예요. 2만 5000부가 아니고, 딸각 9000부뿐만 아니고 이런 허점을 이용해서 계속하는데 사전 심의가 잘 안 된단 말이지요. 사전에 걸러지면 좋겠지만 못 걸러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은 건데 나중에 그것도…… 지금 국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과장님이라고 그러셨나요?

○문화체육관광부도서관정책기획단장 조선희 과장입니다.

○조은희 위원 과장님께서 지금 설명하시는 거,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이 질문하셨는데 설명하시는 답변이 정확하지가 않다고요. 그 부분이 걱정된단 말이지요.

그러면 앞으로 부정으로 딸각, 딸각 해 가지고…… 그거 얼마나 쉬워요, AI한테 시켜서. 한 부 9000원, 또 한 부 1만 원인지 9000원인지 하여튼 그렇게 하면 그냥 이게 클릭을 몇 번만 하면 9000만 원 가져가는 거예요. 굉장히 그런 우려가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은 이렇게 하면 좋아요. 되는데, 사후에 그렇게 됐을 경우에 응징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은 응징에 대한 부처의 정확한 청사진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걱정돼서 여쭙았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도 지금 확실치 않다 이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은 보완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수정안, 그러니까 수용해 주시겠다고 말씀해 주신 수정안으로 해서 공공재정 부정청구 이 법으로 응징을 시작하고요. 웹툰이나 동영상의 경우는 출판하고는 좀 다르지만 AI를 활용해서 직접 스크롤링하면서 찾아내거든요. 이것도 결국은 그런 식으로 저희가 안을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차관님께서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염려하시는 부분에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추가적으로 또 필요한 법안이 있다면 정부 측에서도 이것을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8항까지 3건의 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연번 1번입니다.

개정안 제2조제5호 및 제8조의2는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 정의 규정을 신설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도록 하며 해당 업무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하려는 것입니다.

5페이지 연번 2번입니다.

개정안 제3조 및 제12조제1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제도와 여건을 조성해야 하는 책무를 신설하고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공익법인을 추가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 6페이지입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으로 인증받을 수 있는 대상에서 공익법인이 제외되어 있는데 공익법인에 해당하는 기업이 출자한 문화재단의 문화예술계 지원 총액은 전체 지원 금액의 54.7%를 차지하므로 공익법인도 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 7페이지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공익법인’의 용어는 개별 법률마다 다른 정의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공익법인을 법령에 명시하는 경우 해당 공익법인에 적용되는 법률 또는 그 성격 및 범위를 함께 규정하는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는바 8페이지 수정 의견에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개정안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에 대한 육성·지원 관련 법적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용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법무부의 의견을 반영해서 공익법인 용어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자구 수정을 희망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술 위원님.

○손술 위원 6페이지에 54.7%가 공익법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법상의 공익법인이 있고 공익법인법상의 공익법인이 있는 건데 이 54.7%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이 맞나요? 섞여 있는지?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문화체육관광부예술행정정책과장 김홍필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왜냐하면 상증세법상 공익법인 같은 경우는 사회복지법인이나 의료법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여기 있는 공익법인은 공익법인법상 공익법인입니다.

○손술 위원 54.7%가 그게 맞다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예술행정정책과장 김홍필 예, 그렇습니다.

○손술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0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은 법률의 유효기간을 현행 2031년 12월 31일까지에서 2036년 12월 31일까지 5년을 추가적으로 연장하려는 것입니다.

3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현행 법률의 유효기간이 2031년까지로 아직 상당 기간이 남아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추가 연장에 대한 논의는 아직 이르다는 의견과 아울러 유효기간 연장에 앞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개정안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유효기간을 2031년에서 2036년까지 5년 연장하는 것이 주요 내용입니다.

현재 종합계획상 재원 투입은 2028년에 종료될 예정이나 2025년 말 기준 재정 투입 실적이 53.4%에 불과함을 고려할 때 기한 내에 마무리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어 개정안에 전부 수용 의견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 유효기간을 연장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금 현재 제3차 종합기본계획이 진행 중인데요. 이게 22년도부터의 종합계획입니다. 그런데 21년에 이것을 연장한 이유도 같은 이유였습니다. 재정 집행이 예정대로 안 되고 있기 때문에 연장을 했는데 역시 2028년부터 4차 종합계획이 되어야 될 텐데 지금 그것을 수정해 놔야, 연장을 해 놔야 여유 있게 종합계획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서 연장을 하도록 했습니다.

○박수현 위원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차관님, 저는 문체부가 참 무책임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시기상조 다라는 기획예산처와 이견이 조정됐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조정 못 했습니다. 안 됐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러니까요.

28년까지의 재정 투입 계획이 22년에 세워졌잖아요. 21년에 유효기간을 한 차례, 5년 연장했잖아요. 거기에 맞춰서 종합계획을 수립했지요? 맞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습니다.

○조은희 위원 그런데 이 계획을 세워 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저조했지요. 사업의 구체성이 부족하다, 계속 문제 제기가 있었습니다. 결국 또 계획이 실패하고 또 시한 연장해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문체부는 그동안 뭐 했습니까?

그러면 지금 필요한 게 유효기간 추가 연장인지, 애초에 문체부가 설계한 예산 설계가 잘못됐고 사업 관리가 부실했고 이런 것 아닌지 되묻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문체부는 뭐 합니까? 광주 출신 의원이 연장해 달라고 개정안 내면 그렇게 해 주겠지, 아니면 밀리겠지…… 5년 뒤에 또 법정 유효기간 늘려 달라는 얘기 나오지 말라는 보장이 어디 있습니까?

정말 문체부가 사업을 하고 싶은 생각이 있었다면 그리고 있다면 현 단계에서 필요한 것은 조기 연장이 아닙니다. 예산 설계가 잘못된 것은 아닌지, 제대로 집행이 안 되고 있는 실패 원인이 뭔지, 구체적 한계는 없는지 객관적인 성과 평가가 있어야지요. 그런데 오죽하면 광주 출신 민 의원께서 연장해 달라고 이렇게 했겠습니까. 이것 연장해 달라는 개정안 안 하면 일몰되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제대로 못 하면?

저는 여기에 반대하지는 않겠습니다. 문체부의 무책임함을 따갑게 지적합니다.

이달 초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특별법이 통과됐습니다. 7월부터 출범할 예정이지요. 그래서 이번에 민형배 의원이 개정안 발의하신 것에 대해서 제가 반대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통합 과정에서 여러 사업들을 진정성을 갖고 보시고 종합적으로 바라보고, 다시 추가 연장해 달라 이런 개정안이 올라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은희 위원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이소희 위원님.

○이소희 위원 저도 사실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요.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처럼 성과 평가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이 의견을 드리고 싶고.

왜냐하면 22년도에 종합계획 수정계획에서도 사업의 구체성이 결여되어 있고 사전절차 미이행으로 인한 저조한 집행을, 가시적 성과 창출 계획 부족 등이 한계로 지적됐는데 사업 진행 부진 원인에 대한 종합적·객관적 성과 평가가 충분히 이루어졌다고 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또 문제는 정부가 집행을 저조 원인으로 낮은 재정자립도에 따른 국비량 지방비 매칭의 어려움을 제시했는데 지금 광주광역시도 재정자립도가 오히려 악화된 상황이거든요. 그렇다면 사실 이 유효기간만 연장한다고 해서, 사실 동일 조건 상태인 건데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굉장히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유효기간 연장을 하기에 앞서서 아까 말씀 주신 대로 사업 성과에 대한 평가를 선행하고 집행을 저조 원인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좀 파악을 하셔서 사업 추진 여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마련하시는 게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위원님 말씀하신 두 가지 하겠습니다. 성과 평가하고 사업 설계 다시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 저도 잠깐, 관련해서 덧붙이고 싶은데요.

어쨌든 시간을 끌면 끌수록 결과적으로 비용구조는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지금 두 번에 걸쳐서 연장이 됨으로 해서 애초에 설정된 예산으로 가능하겠는가, 사실 그것조차도 의문시됩니다.

그래서 이번만큼은 철저하게 사업 관리, 성과를 따져 보고 집중적으로 해낼 부분은 해

내서 기간을 더 이상은 연장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임오경 지금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들 주셨습니다. 저도 이렇게 지켜보니까 문체부의 방만한 행정력, 속도에 있어서 질책을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그냥 단순한 지역 사업이 아니라 차관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문화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국가적 프로젝트 사업입니다. 알고 계시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지금까지 집행이 부진했던 원인에 대한 분석과 추진체계 개선방안에 있어서 다음에 전체 상임위가 있을 때 우리 위원님들에게 이 부분이 왜 이렇게 되었는지 한번 설명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소위원장 임오경 그리고 기간을 연장은 해 드리지만 이 기간까지 꼭 마쳐야 되는 의미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속도를 내어서 더 빠르게 조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잘 챙겨주시기를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원안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1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개정안 제20조제3항·제4항 및 제5항은 지방자치단체가 한류산업 등의 진흥과 관련된 분야에서의 지역 주민에게 일자리 제공을 위하여 교육훈련 실시, 일자리 연계 지원, 일자리 알선을 위한 정보 제공의 사업을 실시하고, 한류산업진흥을 위한 거점기관을 지정하거나 지원하며, 지역 거점기관 또는 진흥기관과 협력하여 관련 전문인력 양성, 창작·제작 시설, 유통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일자리 제공 사업 실시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한류 관련 지역 일자리 발굴을 활성화하려는 것으로 조문 내용의 명확성 제고를 위해 2페이지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한류산업 관련 지역 일자리를 발굴하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인 한류산업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개정안의 입법취지에 동의하고요.

다만 법규정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거점기관 표현을 통일하는 전문위원실 의견을 수용해서 수정안 검토를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차관님, 제가 한말씀드릴게요.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지자체마다 거점기관이 지정되는 거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지정할 수 있는 겁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자치단체별로 설치된 콘텐츠진흥원이 거점기관의 역할을 하게 된다는 말씀이지요?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의무적으로 하라는 것은 아니고요.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다면 법안이 통과되면 시행 전까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거점기관 지정과 운영을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문체부가 긴밀히 협조를 해 주셔야 되는 것……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예.

○소위원장 임오경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한류산업진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2항·제13항, 2건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설명하기 전에 의사진행발언이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사진진흥법 공청회가 조금 전에 있었습니다. 제정법입니다. 제정법은 축조심의도 이루어져야 되고 그 법에 대해서 위원들이 제대로 살펴볼 시간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공청회를 했고 우리 위원들이 다양하게 질의도 했고 또 정부에서 답변이 미흡한 점도 있었어요. 제대로 된 숙의 과정이 필요한데 그냥 여기서 법안을 상정해서 오늘 공청회 해 놓고 오늘 법안을, 축조심의도 제대로 되지 않는데 이렇게 되는 게…… 그러면 과연 공청회가 무슨 의미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검토보고서도 보면 사진진흥법은 19대 때부터, 2015년경부터 논의가 됐는데 소위 검토보고서도 과거 문법에 있다는 생각도 지울 수가 없고, 어제 소위 안건이 추가되고 5시간 만에 제정안 검토보고서가 제출될 수 있었던 것도 저는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10년 사이 제도, 환경, 기술이 많이 바뀌었는데 우리 위원들이 충분히 생각하고 심의할 수 있도록 해 주셔야지, 3시에 공청회 하고 아직 5시도 안 됐는데 상정해서 심의한다는 게 좀…… 이런 경우는 저는 여태까지 상임위 하면서 없었거든요.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이 부분은 다음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의사진행발언으로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말씀 감사합니다.

저희가 여야 간사 간에 또 위원장님과 합의하에 제정법에 관련해서 공청회를 생략하고도 직회부해서 법안소위에서 심의를 해서 의결하는 과정은 계속 지속돼서 있었습니다. 이 법안 또한 여야 간사 간의 협의가 위원장님과 함께 있었고 공청회를 하고 난 후에 안건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논의가 일단 되었다라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위원님이 주신 말씀 제가 잘 경청하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올라온 법은 저희가 여야 간사 간 또 위원장님과 합의하에 또 행정실과도 함께 이 규정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도 잘 검토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님이 양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조은희 위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야 간사 간 합의했다는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둘러 오늘 처리하지 말고 이것을 좀 보류해서 다음에 하면 어떨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니까 협의해서 안건으로 올라온 만큼 일단 저희가 법안 심의를 한번 해 보고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또 정부 측 의견도 들어보고 위원님들의 의견도 들으면서 그 부분은 결정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두 제정안의 입법 배경 및 목적에 대해서 총괄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하단 부분입니다.

현재 사진은 문화예술진흥법과 미술진흥법에서 문화예술 및 시각예술의 한 장르로만 포괄적으로 규정될 뿐 개별 법률이 없어 사진 창작 지원, 산업 육성, 공공적 기록물 관리, 기술 개발 등에 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법적 근거가 부족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문단입니다.

이에 각 제정안은 사진 및 사진산업의 지원과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문학, 미술, 국악 분야와 같이 개별 법률로 정하여 사진 창작 및 산업 진흥 등 전반에 걸친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그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으로 이해됩니다.

4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본 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미술진흥법에 따라 미술 분야 장르 간 구분 없이 예산을 지원하고 있고, 생성형 인공지능 등의 기술 개발로 장르 간 경계가 허물어지고 있는 점과 해외에서는 별도의 사진진흥법 제정 사례가 없는 점을 고려할 때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공청회 주요 진술 요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부터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연번 1번, 목적 및 정의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 정의 규정에서 박수현 의원안은 사진, 사진작품, 사진산업에 대하여 정의하고 있고, 이연희 의원안은 사진문화, 사진진흥, 사진서비스업에 대하여 추가적으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안 제1조 목적 규정은 6페이지 수정의견에 정리되어 있는 바와 같이 미술진흥법의 목적 조항을 참고하여 문구를 수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안 제2조 정의 규정과 관련하여 이연희 의원안 제2조제5호의 사진진흥에 관한 사항은 유사입법인 미술진흥법, 국악진흥법 등에서도 진흥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을 감안하여 삭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입니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시행하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데 노력하도록 하며, 안 제4조는 사진진흥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박수현·이연희 의원안 제5조 및 제6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5년마다 사진진흥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세부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창작 및 유통 환경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사진 창작 등 지원 및 국제협력·해외진출 지원에 관한 사항입니다.

먼저 제정안 제7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및 사진작품의 창작 등을 촉진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사진 창작 활성화에 기여하는 사진창작자 및 관련 법인·단체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며, 박수현 의원안 제11조와 이연희 의원안 제10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 관련 국제협력 및 국외시장 진출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양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입니다.

연번 5번, 박수현·이연희 의원안 제8조 및 제9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사진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시스템을 마련하도록 하고 필요시 전문인력 양성기관을 지정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사진과 사진작품 및 사진산업과 관련된 기술 개발에 필요한 연구·조사 및 기술개발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29페이지입니다.

연번 6번, 지식재산권의 보호에 관한 박수현 의원안 제10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사진 창작 등의 보호·육성에 필요한 지식재산권 보호 시책을 강구하여야 하고 사진의 기술적 보호 및 권리관리 정보의 부착, 지식재산권 교육·홍보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내용입니다.

31페이지 되겠습니다.

이러한 박수현 의원안 제10조는 현행 저작권법과 미술진흥법에 따라 현재 보호되고 있는 사진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보호시책 강구 의무와 관련 사업 추진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함으로써 사진 창작 등의 활동을 장려하고 사진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입법으로 이해됩니다.

다음은 33페이지입니다.

연번 7번, 이연희 의원안 제11조 및 제12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진진흥에 기여한 우수 사례를 발굴·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국가로 하여금 사진 자료가 체계적으로 수집·보존·관리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5페이지입니다. 연번 8번입니다.

먼저 이연희 의원안 제13조 및 제15조는 사진산업 또는 사진서비스업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자가 업무상 알게 된 사진 이미지 등 개인정보를 당사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려는 것이며, 박수현 의원안 제12조와 이연희 의원안 제14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 또는 업무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6페이지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규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일반법으로 개인정보처리자가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목적 외로 이용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데 반해서 이연희 의원안 제15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위반행위에 대한 제재 수준이 불균형하게 되어 정보 주체의 권익 보호 약화가 우려되므로 벌칙 조항을 삭제하거나 개인정보 보호법과 동일하게 법정형의 수준을 상향하여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며, 38페이지 수정의견에 이를 반영하여 조문을 정리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연번 1번 목적 및 정의부터 연번 8번 개인정보 보호 의무, 권한 등의 위임 및 벌칙까지 수석전문위원실과 긴밀히 협의해서 수정의견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위원 의견에 동의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소위 위원님들 질의 답변 부탁드립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절차와 과정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공감이 됩니다. 충분히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다만 간사님께서 설명하신 대로 여야 간사 간 합의 또 위원장과의 합의를 거쳐서 상정된 법이니 만큼 오늘 처리되는 것이 좋겠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명칭이 제정법이어서 축소심사 등 여러 가지 내용을 우리 위원들이 좀 신중히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조은희 위원님 말씀 매우 일리가 있습니다만 전문위원으로부터 내용을 보고받으신 대로 보면 이 제정법이 무슨 특별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거나 그런 내용이 아니라 각 항목별로 보면 지극히 당연한 원론적인 수준의 그런 내용들을 박수현 의원안과 이연희 의원안을 중심으로 잘 조합을 해서 만든, 원론적인 그런 내용들로만 되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과정이 좀 급하게 처리되고 또 축소심의 등 이런 신중한 검토가

부족한 것도 사실로 인정합니다만 내용의 원론적 수준 입장을 볼 때 그리고 19대부터 이 문제가 계속 제기되어 왔다가 폐기를 반복해 왔던 그런 과정을 생각할 때 그리고 앞서 있었던 공청회의 내용이 사실 많은 이야기가 있었습시다만 정리해 보면 찬성 측 의견이나 반대 측 의견이나 모두 이 법률의 제정에는 찬성하는 의견을 기본으로 전제하고 있고, 다만 반대 의견에서는 미술진흥법으로 포섭할 수 있는 내용이 있다라고 하는 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그런 차원이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님께서 융복합의 어떤 흐름에 맞지 않다는 점도 있지만 미술과 사진이라고 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사실은 다를 수도 있는 그런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점에서 무조건 융복합의 흐름에 맞춰야 한다라고 하는 것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사진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특징, 본질적 요소 등을 생각할 때 이것을 꼭 미술진흥법으로 다 포섭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도 우리가 사진이 가지고 있는 가치를 대하는 태도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공청회 의견에서도 찬성 반대 모두 다 이 법의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 공감하였고 또 지금 현재 담고 있는 이 조정안이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안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제정법으로서 이런 틀을 오늘 검토를 해 주시고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추후에 좀 신중히 검토해서 개정안 등으로 그렇게 이행해 가는 것이 맞겠다 하는 측면에서 오늘 이 원론적이고 기본적인 내용을 담은 제정법안을 함께 검토해 주시고 처리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존경하는 박수현 위원님 말씀은 잘 들었는데 죄송하지만 저는 완강한 반대 의견입니다.

차관님, 바로 직전에 사진진흥법 공청회가 있었잖아요. 공청회에서 위원들의 질의, 의견을 제대로 검토할 수 있었는지 저는 의문입니다. 충분한 숙의 과정이 없어도 된다고 보십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아까 위원님께서 모두에 의사진행발언을 통해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19대 때부터 제정이 시도되었던 법안이기 때문에 이미 숙성된 법안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조은희 위원 19대 때부터, 옛날 법안이지요. 옛날식이지요. 19대가 몇 년입니까? 2015년입니다. 2015년 때부터 해 오던 법안을 지금 한다는 게, 과거로 가는 법안 아닙니까? 아까도 얘기했는데 제도환경, 기술환경이 완전히 달라졌어요. 장르 간에 콘텐츠 간 경계가 허물어지잖아요. 오늘도 쇼트폼 콘텐츠, 1인 유튜버, 이전에 없던 뉴미디어에 대한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법 공청회를 오늘 연 것 아닙니까?

그런데 15년 전의 법을 지금 와서 ‘15년 전의 것이니까, 숙의과정 별로 필요 없으니까’ 그렇게 답하는 게 저는 차관님이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왜 별도 개별법이 필요하지 충분한 설명도 안 됐어요.

위원장님께서 챗GPT 좋아하시니까 저도 챗GPT 봤어요. ‘미술’ 해 봤어요. 우선 ‘예술’부터 먼저 할게요. 시각예술, 회화·조각·사진이에요. 그러면 회화진흥법, 조각진흥법, 사진진흥법.

공연예술, 연극·무용·오페라예요. 연극진흥법, 공연진흥법, 무용진흥법, 오페라진흥법.

아까 존경하는 이소희 위원님 얘기하셨지요?

음악예술, 클래식·국악·대중음악. 클래식진흥법, 대중음악진흥법 이런 것 다 제정하셔야지요.

그러면 디자인, 건축·패션. 건축진흥법, 패션진흥법 다 하실 것입니까?

또 있어요. 제가 ‘미술’ 해 봤거든요. 순수미술—파인아트라고 해요—회화·조각·판화·설치미술·드로잉. 나중에 회화진흥법, 조각진흥법, 판화진흥법 다 제정해야 되겠네요.

확장된 시각미술, 기술과 결합. 사진, 영상 미술, 미디어아트, 디지털아트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얘기합니다. 사진, 영상 미술, 미디어아트, 디지털아트인데 사진진흥법 되지요? 그러면 문체부에서는 영상미술진흥법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미디어아트진흥법, 제정법 하셔야 됩니다. 지금 왜 중심을 바로 세우지 못하고 계세요?

또 많습니다. 공예, 도자공예진흥법 다 해야 되겠지요.

이게 지금 나라가 무너지는 것입니까? 이게 전쟁 나서 누구를 지원해야 되는 법입니까? 그런데—박수현 위원님, 죄송합니다—여당 의원 두 분이 제정법 했다고 저렇게 목소리를 못 내시고 급하게 2시간 전에 공청회 하고 지금 여기서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뭔가 전쟁에서의 피해복구 이러면, 지진의 피해복구, 화재의 피해복구 그러면 해야지요.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에 적극 공감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그러나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은 숙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모든 분야를 나열하면서 그 개별법이 제정될 필요가 있는 것이냐라고 지극히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말씀하시는 측면이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공청회에서 찬성이든 반대든 이 법의 제정 필요성에 대해서 함께 공감하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다만 차이는 반대의견에서는 미술진흥법에서 포섭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는 게 좋겠다라는 정도의 의견을 내셨고 지금 이 조정안에는 그런 부분들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여야 간사의 합의와 위원장의 합의로 오늘 안건이 상정이 되었기 때문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의 취지는 충분히 오늘 속기록에 담겨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조정안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어떤 이해충돌이나 여러 가지 특혜나 이런 어떤 구체적인 내용들이 담긴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제가 계속 여기 설명자료를 다 체크해 봤지 않습니까? 지극히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그런 기본적인 수준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제정안으로서는 적절한 수준의 조정안이다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조은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숙의과정의 부족은 충분히 인정합니다만 이례적으로 공청회에서 찬반의견 모두가 제정법의 필요성을 다 인정한 바이기 때문에 오늘 조은희 위원님의 말씀은 속기록에 소중하게 남겨 드리고 이 법을 좀 처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차관님, 저도 한말씀드릴게요.

제가 문체위원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법은 정지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만들어진 제정법들에 의해서 저희는 개정밖에 할 수 없다. 그래서 어떻게 보

면 퍼즐게임하듯이 계속해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6년째 지금 문체위를 하고 있지만 저는 현장의 목소리를 더 경청하고 현장에 더, 좀 시대에 맞게, 변화되는 환경에 맞게 저희가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는 앞으로 좀 더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스포츠를 했던 사람으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생활체육과 전문체육이 통합이 돼서 불편한 점이 너무 많고 개인종목과 구기종목에 불편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잘하면 같이 잘했다고 하는데 문제가 발생했을 때는 종목 특성을 따지지 않고 일원화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거기에 맞는 개정법이 계속 발의되면서 규제 아닌 규제가 지속됩니다.

그래서 저 또한 세분화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늘 공청회를 듣고 바로 저희가 이렇게 법을 논의하는 것에 있어서는 저도 빠른 감은 들지만 19대 때부터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정쟁인 법안은 아니었다. 그래서 계속해서 폐기되고 폐기되고 했던 법안을 좀 뒤늦게 이렇게 공청회를 통해서 상정까지 하게 됐던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22대 국회 전반기 간사로서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공청회를 먼저 처리하고 그리고 법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시간을 좀 길게 가졌더라면 오늘 조은희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있어서 제가 좀 더 답변을 해 드릴 수 있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면서 조은희 위원님에게는 다시 한번 좀 이렇게 저희가 안건으로 올려서 바로 공청회와 법안을 심의하는 것에 있어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하지만 저도 오늘 공청회를 통해서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을 했지만 진술자들의 설명이 조금 미흡한 부분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저는 차관님께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문체위 법안을 논의할 때마다 기획예산처에서 어떠한 법안이든 계속해서 문제를 가지고 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예산처에서 준 내용을 보게 되면, 해외에 별도의 사진진흥법 제정 사례가 없다라는 이 자구를 읽으면서 상당히 불쾌했습니다. 이 불편함을 감출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우리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해외사례 법이 있는 법만 저희가 논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는 것입니까? 왜 기획예산처에서는 이렇게 만들어서 저희에게 자꾸 제출하는 것입니까? 저는 이것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이 유리천장의 벽을 깨야 되는 게 저희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제도 제가 2소위에 들어갔다가 상당히 불쾌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기획예산처에서 해외사례에 법이 없다라고 합니다.

질문할게요.

해외사례 법이 없으면 저희는 법안 통과 못 시킵니까?

○문화체육관광부제1차관 김영수 그렇지 않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대한민국이 먼저 선도적으로 법안 통과시켜서 해외가 대한민국 사례를 중심으로 해서 법을 만든다라면 그게 잘못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처에다가 똑똑히 전달하십시오. 앞으로 문체위에서 심의하는 법안, 발의된 법안을 가지고 건 바이 건으로 와서 이렇게 대응하지 말라고 해 주십시오. 진짜 제가 요청드립니다. 어제도 너무 불쾌했는데 오늘 또 기획예산처에서 가져온 이 내용을 보면서, 의

견을 보면서 제가 차관님께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이 팽팽한 의견들을 주시고 있는데 오늘 공청회에서 두 진술인들께서도 사진진흥법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다 필요하다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완벽한 제정법도 또 개정법도 없습니다. 미비한 부분을 저희가 계속해서 하나하나 그 부족한 부분들을 보완해 나가는 게 여야를 막론하고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해 주셔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좀 부족한 부분들이 있는 부분은 좀 양해를 해 주시고 저희가 보완해야 될 법안들은 위원님들이 지속적으로 개정법으로 좀 더 보완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위원장의 의견을 좀 말씀드려 봅니다.

조은희 위원님.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의 그런 진행에 저는 동의가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위에서 반대하고 있는데요. 제가 반대하는데 어떻게 할 것입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저희가 지금 소위를 하고 있는데 다른 위원님들의 의견들도 좀 들어 보고 그러고 나서 최종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존경하는 조은희 위원님의 지적도 일부 공감은 가지지만 이 법안이 그동안 오랫동안 제정되지 못하고 표류해 왔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진을 단순히 예술의 영역에서만 미술진흥법에 의해서 규정하고 규율하는 것의 한계가 명확하게 오늘 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사진이 이제는 사진산업이나 아니면 사진의 문화, 사진서비스업 등 특히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은 핸드폰, 스마트폰에서 누구나 지금 사진을 찍고 있는 시대가 됐는데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이 예술의 영역에서는 또 사진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저작권을 보호하기 위한 문제들도 첨예하게 대두되고 있는데 그것을 좀 산업적 가치와 저작권의 가치 이런 것들을 체계적으로 보장할 수 있는 입법이 절실한 시점에 와 있지 않는가.

그래서 지금 일부 미술진흥법과 교차하는 이런 부분은 아까 다 조항이 삭제되고 보완이 됐고 수정안에 다 반영이 잘 되어 있다고 제가 확인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법안을 의결하고 또 혹시 추후에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개정을 통해서 가다듬어 나가는 것이 타당하지 않겠는가, 언제까지 계속해서 표류시킬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은희 위원님께서 결단을 한번 해 주시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의견 없으십니까?

이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의사일정 제12항 및 제13항, 2건의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므로 국회법 제71조 및 제112조에 따라 거수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성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위원님은 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 표결)

손을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위원 7인 중 찬성 5인, 반대 2인, 기권 0인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조은희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예.

○조은희 위원 소위에서 표결하는 경우는 저는 굉장히 혼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왜 그렇게 급하시지요? 2015년부터 해 왔다고 존경하는 조계원 위원이 얘기하시는데 22대 때, 오늘 공청회 했습니다. 왜 이게 급하시지요? 왜 오늘 공청회 하고 오늘 통과시켜야 됩니까? 재난법도 아닌데요.

그런데 왜 민주당 위원장과 민주당 위원들은 이것을 거수로까지 소위에서 해서 우리의 오랜 전통을 깎을까? 국회법에 의거해서 표결하셨다 하더라도 국회법은 관습법이 있습니다. 소위에서는 이렇게 하면 다음으로 미룹니다. 숙의 과정을 거칩니다. 그런데 이것을 표결까지 하셔야 되겠습니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앞으로 의견이 다르면 계속 표결을 해서 국회의 오랜 전통을 깨시겠습니까?

저는 이 법안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오늘 공청회 하고 오늘 표결까지 해야 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됩니다. 민형배 의원안은 제가 동의해 드렸습니다. 이 안은 그런 게 아니에요. 왜 그렇게 고집을 피우셨습니까? 정말 유감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은희 위원님 말씀 잘 경청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공청회는 생략할 수도 있고 공청회를 저희가 경청한 후에 제정법에 관련해서는 바로 논의를 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위원장님과 여야 간사 간에 합의해서 또 정부 측에도 또 행정실에도 저희가 자문을 다 구해서 합의된 사안에서 논의를 했기 때문에……

위원님의 불편한 심정은 제가 잘 경청하겠습니다.

그리고 숙의 과정을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기본적으로 숙의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것 또한 위원님들의 요청 그리고 여야 간사 간 그리고 위원장님에게 저희가 과정을 거쳐서 이게 합의가 된다면 계속해서 문체위에서는 숙의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법안 안건으로 상정을 해서 바로 논의도 했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조은희 위원 야당 간사가 표결하라고 합의했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이것도 야당 간사님하고 말씀을 나눌 때 특별히 정쟁 없는……

○조은희 위원 간사가 지금 없어서 제가 확인을 못 하겠는데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정쟁 없는 법안이었기 때문에 올려 주셨습니다.

○조은희 위원 지금 간사 핑계를 대시면 안 되지요.

○소위원장 임오경 아니, 그게 아니라 이게 2015년부터 발의가 되어서……

○조은희 위원 아니, 이게 재난법이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진행해 주십시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특별하게 정쟁이 없는 법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합의를 했고 그랬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조계원 위원 제가 한 말씀 더 덧붙이자면 지금 조은희 위원님께서 이 법안의 조문상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보다는 이 공청회가 이루어진 직후에 표결을 하는 게 정당하냐 이러한 문제 제기를 한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 부분은……

○조은희 위원 아니, 조문상에도 있습니다. 숙의가 없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지적을 못 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그전에 다른 제정법의 경우에도 공청회 없이 소위에서……

○조은희 위원 법안을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조계원 위원 소위에서 토론하고 통과시킨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조은희 위원 법안 심의를 이렇게 하시면 안 되지요. 이게 재난법 아니지 않습니까?

○소위원장 임오경 문화체육관광부 김영수 차관님 등 정부 관계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국가유산청 최보근 차장님 입장해 주십시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2건의 개정안 제49조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닌 국가지정문화유산의 소유자 등에게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하여 지급하는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 제한을 폐지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현재 국가지정문화유산의 민간소유자 등은 국가유산청의 지침에 따라 지원금을 인건비, 경상경비 그리고 시설관리비 비목으로 구분하여 집행을 하고 매년 정산 및 실적보고서, 회계 감사보고서 등을 국가유산청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런데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이 관람료 감면에 따른 민간소유자 등의 재산 손실에 대해 보전하는 성격임에도 불구하고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해당 문화유산의 관리로 제한하고 있어 제도의 본래 취지와 맞지 않고 민간소유자 등의 재정 자율성을 제한하고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삭제하려는 것입니다.

아랫부분입니다.

박정하·임오경 의원안의 경우 관람료 지원을 임의사항으로, 반면 임이자 의원안은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정책적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 3페이지입니다.

개정안에 대하여 기획예산처는 관람료 감면에 대한 국고지원은 문화유산 관리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재정 지원은 용도가 명시되어야 방만한 예산 집행 및 낭비 방지가 가능하므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며, 서울특별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람료 지원이 의무화될 경우 민간소유자 등의 자율적 관리 책임 의식이 약화되어

형식적 공개 및 운영 책임 회피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므로 재정 지원을 의무화하는 것은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청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람료를 지원받는 국가지정문화유산 민간소유자의 재정 자율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법 개정안 취지에 공감합니다. 관람료 지원을 임의사항으로 정한 박정하·임오경 의원안으로 통과시켜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만 재정 집행의 자율성이 높아지더라도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지원 예산이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를 위해서 재정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하위법령 개정 시 이런 취지가 잘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기관과 잘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의 질의답변 부탁드립니다.

손솔 위원님.

○손솔 위원 사실 제가 고민이 좀 많이 됩니다. 이 법안이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이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문화유산을 보존·관리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 법률에서, 저희가 그 바탕에서 논의를 하는 건데 여기에서 논의하는 맥락이 손실이나 재산권의 방향으로 좀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법의 큰 틀의 바탕과 취지와 이 논의가 맞는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습니다. 사실은 관람료의 감면 자체도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함이고 그에 대해서 보조금의 형태로 지원을 하는 것이지요.

혹시 문화유산에 대한 것이 아니더라도 관람료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거나 하는 사례가 더 있습니까, 유산청에서 다 알고 있지는 못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국가유산을 국가가 직접 관리하고 소유하고 민간이 직접 관리나 소유를 할 경우에는 정부 재정 지원을 통해서 하고 있고요. 이 경우에는 국가지정 문화유산을 민간이 소유했을 때 지원하는, 관람료를 못 받게 될 경우에 그 부분을 보전해 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화유산법에 이런 부분을 조항을 넣는 것도 저는 문제는 없다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지정된 국가문화유산에 해당되는 것이니까 이 법체계 안에 넣는 게 맞다고 보고. 다만 관람료를 자율성을 높이더라도 어쨌든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의 제정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쓰도록 하면 저희는 될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손솔 위원 그래서 향후에 하위법률에, 이렇게 본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손솔 위원 그런데 제가 볼 때 지금 논의가 이렇게 돼서 통과가 되면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비용 지원금 집행 항목이 현재는 이렇게 정해져 있는데 이것이 없는 채로 가는 방향으로 논의가 되어 있는 것 아닙니까, 지금 우리 논의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 집행 항목이 꽤나 넓고 거의 모든 내용을 포괄하고 있는데 이 집행 항목에 맞게 보고하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열어 두는 것이…… 그러면 어떤 항목으로 더 사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그리고 그에 대한 공적인 통제·감시 영역이 없어지는 것이 아닌지 이런 것에 대한 우려

가 있는 것이거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 부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그동안 관람료를 직접 징수했을 때는 그 관람료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분야에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국가 지원을 받으면서 국가보조금법에 의해서 제한을 받게 되는데, 목적도 어느 정도 제한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 관람료를 직접 징수했을 때는 지역사회 발전이라든가 타 사찰 지원이라든가 불사라든가 토지 매입 같은 것에 자유롭게 썼던 부분이 있는데 그 이후에 국가재정을 지원받으면서 그런 부분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런데 이게 개정이 되면 그전에 국가재정 지원을 받으면서 어려웠던 부분이 용도가 넓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용도의 범위는 정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집행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될 수 있도록 지원 자격이라든가 절차라든가 그다음에 집행 방식 이런 부분도 저희가 대통령령에 정해서 그런 규정에 따라서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그러니까 용도를 다 없애거나 한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손술 위원 기준을 두신다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손술 위원 그리고 2페이지에 ‘지원금의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현행 규정을 폐지하려는 것으로’라고 하면서 마지막 줄에 민간소유자의 신규 참여를 유도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손술 위원 이것을 하면 민간소유자가 신규 참여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유가 돼요? 동기가 됩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지금 대상이 총 69곳입니다. 그중에 65곳이 참여하고 있고요. 4곳이 참여를 안 하고 있는데 그중에 일부는 용도의 범위가 넓어지고 그다음에 보조금이 아닌 성격으로 정산하지 않고 자유롭게 쓸 수 있다면 참여하겠다는 곳도 있습니다.

○손술 위원 이 4곳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4곳 중 2곳 정도는 그렇게 참여 의사를 밝혔습니다.

○손술 위원 정산을 하지 않게 되는 건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보조금법에 의한 정산을 하지 않게 되고……

○손술 위원 보고는 받으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저희는 규정을 만들어서 집행 상황에 대해서 보고도 받고 그런 부분도 확인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하여튼 지원 금액이 꽤 있잖아요. 그러니까 돈을 쓰고, 이게 개별적으로 쓰는 게 아니고 어쨌든 국고가 들어가는 건데 통제가 안 될까 봐 걱정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이드를 마련하실 계획이신 건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이게 국가재정이고 국민의 세금입니다. 어쨌든 이 법의 목적과 취지에 맞게 쓸 수 있도록 시행령에 그런 부분을 담아서 목적 외 사용이라든가 그다음에 방만하게 지출되는 부분이 없도록 잘 관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차장님, 설명을 위원님들이 조금 더 이해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겠어요.

원래는 국립공원 안에 있는 사찰들을 저희가 지원하는 거잖아요, 문화유산을 보유하고 있는. 그렇지요? 국립공원을 무료화 하면서 그러면 이 사찰들을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시작은 그렇게 된 거잖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그전에 이 입장료를 가지고, 관람료를 가지고 사찰에서는 자유롭게 비용을 사용했었습니다. 그 비용을 제재받은 것은 종단 관리감사 정도로 끝났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국립공원 무료화 하면서 어디까지나 그 안에는 사찰 땅임에도 불구하고 사찰하고 협의 없이 이렇게 국민 중심으로 돌아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협의가 될 때도 사찰과 이 비용의 사용처를 정확하게 협의한 후에 저희가 보조금 지원을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논의 없이 법으로 저희가 규정을 해 놓다 보니까 사찰에서는 이러한 불만들이 터져 나왔던 거지요.

그래서 제가 이 법을 발의한 사람인데, 국민의 문화유산 향유권 증진을 위해 민간소유자가 관람료를 감면할 경우 국가나 지자체가 감면된 비용을 지원할 수 있으나 이 비용을 오직 국가지정문화유산의 관리를 위한 비용으로만 쓸 수 있어서 현장의 애로사항이 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또한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은 민간소유자의 재산 손실에 대한 보전금 성격을 가지고 있음에도 지원금 지급 목적과 지출 용도를 제한하는 것은 민간 소유자의 재정 자율성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서 개정안을 발의한 것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또한 소유자 또는 관리단체가 감면 지원비용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경우 예산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확보하기 위한 모니터링체계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재부에서도 이것을 문제 삼고 있는 거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유산청의 대책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 부분을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산청의 대책에 기획예산처의 동의를 반드시 받아 내야 됩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계속 협의 중에 있는데 기획예산처는 일단 이 부분은 국가보조금법의 적용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을 갖고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리고 또 하나는 현재 관람료 감면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단양 고수동굴, 구례 운조루 고택 등 국가유산 소유 단체들도 이 법이 통과되면 관람료 감면에 참가할 의향이 있다라고 밝혔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렇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국민들의 국가유산 향유권이 보다 두텁게 보장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기획예산처에서는 충분히 이런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봅니다. 하지만 처음 이 보조금이 어떻게 지원됐는지 그리고 국립공원 관람료가 어떻게 무료화가 되었는지 이러한 부분들을 잘 설명해 주시고.

그리고 저희가 국가보조금을 지원하지만 이것의 감독을 또 안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

까? 그렇지 않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래서 국가유산청에서도 어느 정도는 관여를 해서 관리감독을 저
는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율성을 준다고 그래서 100% 자율성을 주는 게 아니라
국가유산청에서도 그 자율성 안에서 정확하게 사용처를 검토할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하위법령 개정할 때 지원 자격이라든가 부정 수급에
대해서 환수할 수 있는 조항이라든가 적정 사용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집
행의 방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반영해서 이것이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부처 간에 논쟁이 되지 않도록 기획예산처하고도 잘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술 위원 위원장님, 하나만……

○소위원장 임오경 예.

○손술 위원 유산청의 계획이랑 안이 있으신 것 같은데 저는 그것을 본 적이 없어 가
지고 기획예산처랑 논의하고 있는 상황인지랑 관련된 것들이 정리된 게 있으면 저희 실
로도 알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가 정리되면 나중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다만 기획예산처 입장은 저희가 이것을 관리할 수 있는 장치를 시행령이나 규정을 통
해서, 하위법령을 통해서 반영한다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어쨌든 이 부분은 국가보조금법
에 의해서 적용이 돼야 된다는 입장은 명확하게 계속 갖고 있습니다.

○손술 위원 예산처 입장은 그럴 것 같기는 한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재정 당국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손술 위원 그래서 보조금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유산청은 제안하고 있는지 제가
아는 바가 없어서요. 그거를 지금 다 설명하시지는 않더라도 자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알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조계원 위원 지금 69곳 중에 65곳이 보조금을 지원받고 있고 4곳은 현재 참여하지
않고 있다 했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그 4곳은 현재 어떻게 운영되고 있습니까? 아예 국가에서 지원
하지 않고 입장료를 별도로 징수하고 있는 겁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지원하지 않고 있고 관람료를 징수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에 대해서는 별도의 대책이나 이런 것은 없고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만일 소유자가 관람료를 받지 않는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
해서는 저희가 예산 지원이 가능합니다.

○조계원 위원 그러면 기존 65곳의 경우에는 관람료 징수를 안 하고 소위 국립공원 전
체 입장료의 3분의 2를 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거지요? 사찰은 그야말로 자기 종교
적 목적에 따라서 방문하는 경우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 감안해서 입장료의 3분의 2
수준에서 보조금을 책정한 거지요? 아닌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23년도부터 저희가 보조금을 지원했는데 과거에 관람료를 징수했던 액수를 기준으로 해서 저희가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그런데 관람료 감면비용이 성격상으로는 보조금이 아니고 사실상 보전금 성격인데 보전금 성격으로 보면 임오경 위원님 의견대로, 법률안대로 처리하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아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조계원 위원** 그런데 지금 규정상으로는 ‘보조금이다’ 이렇게 표현된 것은 없거든요. 그렇지요? 그런데 왜 기획예산처에서는 보조금법으로 이것을 규율하려고 하는 거지요? 보조금법으로 규율하면, 당연히 투명한 예산 집행과 공개 이것은 회계 처리나 이 측면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보전금 성격을 명확히 하면 이게 해소될 수 있을 것도 같은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기획예산처 입장은 어쨌든 기본적으로 보조금 성격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보조금이기 때문에 법에 ‘국가지정문화유산 관리를 위하여’ 이게 목적에 명확하게 있는 거라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삭제가 되면 보조금의 목적이 삭제가 되기 때문에, 이걸 보조금으로 보기 어려워지기 때문에 기획예산처는 반대하고 있는 거고요.

○**조계원 위원** 조항을 개정하면 보조금 성격은 사라진다, 그렇게 보는 거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렇게 기획예산처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조계원 위원** 기획예산처도 그렇게 보는 거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래서 지금 반대하는 겁니다.

○**조계원 위원** 다만 보조금 성격이 사라지더라도 하위법령으로 시행령을 통해서 예산이 그 목적에, 용도에 맞게 사용되도록 할 수 있죠?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조계원 위원님 말씀을 잘 이해하셨습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이해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문화유산 관람료 감면은 민간 소유자의 재산 손실에 대한 보전금 성격을 가지고 있어요. 보전금 성격을 가지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기획예산처에 이 부분에 있어서 과정, 절차 이러한 부분들을 충분히 설명하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거는 민간 소유자의 재산 손실에 대한 보전금 성격입니다. 그런데 기획예산처는 보조금, 지원금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들 하신 말씀 또 제가 드린 말씀을 잘 이해하셔서 기획예산처를 잘 이해시키라는 말씀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런 부분도 충분히 설명하고 협의는 하고 있습니다마는 계속 재정 당국 입장은 어쨌든 이것은 좀 더 정확하게 정부 예산이고 국민의 세금이기 때문에……

○**소위원장 임오경** 그러면 다시 원상 복구해 놓는다고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지 않습니까, 민간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는데?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하여튼 저희 청 입장을 계속 기획예산처에 얘기하고 설득하고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시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및 제15항, 2건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각각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이를 통합 조정한 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6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에 대해 수석전문위원께서 주요 사항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보고드리겠습니다.

자료 1페이지입니다.

제정안에 대한 총괄적인 검토사항입니다.

2015년도에 백제왕도의 핵심유적 8개소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유네스코 등재지 외에도 왕궁, 왕릉 등 핵심 요소와 외곽 핵심유적에 대한 보존·관리의 필요성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백제왕도 핵심유적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법적 관리체계가 부재하여 보존과 관리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는바 이에 제정안은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체계적으로 보존·관리하기 위한 정책 수립 근거와 안정적인 재원 확보의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제정안에 대해서는 작년 12월 18일에 법안심사소위에서 공청회를 실시한 바 있으며 공청회의 주요 내용은 4페이지부터 정리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정안의 내용을 조문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8페이지 되겠습니다. 연번 1번입니다.

먼저 안 제1조는 제정안의 목적을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2조는 백제왕도, 백제왕도 핵심유적 및 보존·관리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연번 2번 사항입니다.

안 제3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안 제4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고 이 법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고도 보존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도록 다른 법률과의 관계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유사 입법례인 신라왕경법 제3조에서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연번 3번입니다.

안 제5조는 국가유산청장이 5년마다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 및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를 거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안 제6조는 공주시장, 부여군수, 익산시장이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한 후 충청남도지사, 전북특별자치도지사를 거쳐 국가유산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유사 입법례인 신라왕경법 제5조와 제6조에서도 제정안과 유사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

습니다.

14페이지 하단에, 기획예산처에서는 유사 입법례인 신라왕경법 제5조에서 핵심유적 관련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제정안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안 제5조제5호를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연번 4번 되겠습니다.

안 제7조는 국가유산청에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하고, 안 제8조는 국가유산청과 지방자치단체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를 위하여 공주시역 6개, 부여지역 12개, 익산지역 8개, 총 26개의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며, 안 제9조는 국가유산청 및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학술 연구 및 조사 활동을 지원하도록 하고, 안 제10조는 교육 및 홍보 활동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며, 안 제11조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이 소재한 지방자치단체장이 협의체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12조는 국가유산청장으로 하여금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18페이지입니다.

안 제7조(추진단의 설치 및 운영)와 관련하여 2017년 12월 국무총리 훈령에 따라 추진단이 설치되어 운영되어 오다가 2024년 5월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이 개편되면서 추진단이 폐지되었는바 현재는 고도보존육성팀 산하에 백제왕도계가 유사 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국가유산청 소속 인력은 없고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5명이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안 제8조와 관련하여 안 제2조에서는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대통령령으로 위임하고 있는 반면 안 제8조에서는 보존·관리 사업의 대상으로 백제왕도 핵심유적을 공주시역 6개, 부여지역 12개, 익산지역 8개로 한정하고 있으므로 법체계적 정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사업 대상 개수를 한정하지 않거나 유사 입법례인 신라왕경법 제8조와 같이 보존·관리 사업의 대상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제정안과 관련하여 기획예산처는 해당 지역 국가유산 보수정비 등 관련 사업을 고도보존육성팀 등 기존 조직에서 이미 수행 중이며 추가 조직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안 제9조 및 제10조와 관련하여 특정 지역에 소재한 국가유산에 한정해서 강행규정으로 지원을 할 경우 여타 지역과의 형평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한편 행정안전부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추진단은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점에서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다음은 23페이지 연번 5번 부칙입니다.

제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시행일을 결정할 경우 하위법령의 정비를 위한 소요 기간과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두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시행일을 결정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정부 측 의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저희 국가유산청은 전문위원의 수정의견과 같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위원님들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현 위원님.

○박수현 위원 우선 정부 측에 질문하겠습니다.

기획예산처의 의견은 추가 조직을 신설할 경우 별도의 추가 재정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하여 신중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냈는데 추가 재정이 소요됩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러니까 총사업비가 추가되는 건 아니고요. 추진단이 설치되면 어쨌든 인력이 늘어 따라서 인건비가 다소 늘어날 수 있다는 그런 의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수현 위원 행정안전부가 그런 이유로 신중 의견을 냈을 텐데요. 지금 이것이 추가 조직에서 인력이 늘어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국가유산청 내의 총원 내에서 그것을 업무 조정을 통해서 추진단에 새로운 인력을 배치하는 것입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두 가지 방법이 다 가능합니다. 만약에 추진단이 설립돼서 일을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인력 보강이 좀 필요하고 만약에 행안부에서 그만큼 인력을 더 보강해 준다면 인력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것이 안 될 경우에는 저희 유산청이 갖고 있는 자체 정원 내에서 조정이 필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박수현 위원 두 가지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고 그 결과에 따르면 기획예산처나 행정안전부와 의견 조율이 충분히 가능하다는 그런 취지로 이해해도 됩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지요? 지금까지 그렇게 조율을 해 왔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그렇게 해 왔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 법을 대표발의한 의원으로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의 요지는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추진단을 신설한다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런데 이것이 애초에 아까 전문위원의 설명대로 2017년에 이 조직이 있다가 2024년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국가유산청으로 조직을 개편하면서 추진단을 없애고 국가유산청 조직 내의 한 계로 축소해서 운영하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그렇습니다, 고도팀의 계로.

○박수현 위원 그래서 그것이 특별하게 어떤 이유도 없이 조직이 없어진 것이예요. 그래서 애초에 이 조직을 만들었던 취지대로 이것을 되돌리고자 하는 것이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맞습니다.

○박수현 위원 그래서 아까 차장께서 답변하신 대로 총사업비를 더 늘린다거나 추가 예산을 확보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는 아니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아닙니다.

○박수현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추가로 예산을 더 확보한다거나 이런 차원이 아니라는 말씀을 위원님들께 드리고요.

이것에 대해서 시간을 좀 주시면 제가 한 3분에 걸쳐서 설명을 짧게 드려 보겠습니다.

이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 사업은 공주, 부여, 익산 등 백제 고도지역을 중심으

로 2017년부터 추진되어 온 대규모 국책사업이고 총사업비가 무려 1조 4028억 원, 국비가 9317억 원이고 지방비가 4711억 원입니다. 사업 기간은 2017년부터 2038년까지 22년간 이어지는 초장기 계획 국가사업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사업이 근거 법률도 없고 전담조직도 없이 추진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우선 예산 확보부터가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이후 2026년까지 이 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국비가 계획에 따르면 7152억 원이 확보가 돼야 되는데 실제 확보는 4207억 원으로 이 계획의 59.4%밖에 확보가 되지 않았습니다.

또 더 심각한 것은 그렇게 예산 확보도 잘하지 못했는데 집행률도 보면 2017년부터 2024년 동 기간 동안 예산의 평균 집행률이 78.1%에 불과해요. 그러면 계획 대비 59.4% 예산밖에 확보하지 못하고 그 확보한 예산 중에서도 78.1%밖에 집행하지 못했다면 전체적으로 보면 계획 대비 얼마입니까? 확보된 예산의 50%도 채 안 되는 예산밖에 집행이 안 되고 있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래서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이 사업을 할 때는 그만큼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대규모 장기국책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인데, 이게 38년까지 되는데 아마 이런 속도로 간다면 38년은 고사하고 2050년이 가도 안 될 것 같다는 결론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문제가 되는 핵심 원인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담추진단이 폐지되어서 이 사업 추진 체계가 부실화됐다고 하는 데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2024년 5월에 윤석열 정부에서 국가유산청 이 조직을 개편하는 과정에서 이것을 그냥 폐지해 버린 이것이 가장 큰 문제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한편 보면 현재는 고도보존육성팀 내의 백제왕도계로 조직이 축소되었는데 이 추진단이 존재하던 시절에는 그 당시의 문화재청, 지금 국가유산청 직원 6명을 포함해서 총 12명의 인력이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유산청 소속 직원 한 명도 없이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5명만 남아 있는 상황이에요. 이런 인력 가지고, 이런 수준 가지고는 추진이 안 됩니다. 1조 원이 훨씬 넘는 이 막대한 국가예산을 지방자치단체에서 파견한 직원 5명이 추진한다, 관리예산을 확보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반면 신라왕경 핵심유적 복원·정비사업은 특별법이 2019년에 제정되어서 이 법령 조직을 유지하고 현재 국가유산청 직원 7명, 지자체 파견 직원 4명으로 총 11명이 전담하고 있어요. 이렇게 직원이, 조직이 있으니 일을 더 많이 할 수밖에 없지요.

그러면 백제에 비해서 많이 앞서가던 신라는 이런 조직을 유지하면서 더 많은 일들을 기획하고 발굴하고 하는데 그렇게 패망한 역사, 땅에 묻혀 있던 백제는 이 조직이 없으니 더 많은 일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일을 더 못 하는, 그래서 속도가 더욱 떨어지는 이런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신라왕경 사업이 이 특별법에 따라서 5년마다 종합계획을 세우도록 돼 있는데 따라서 2021년부터 25년까지 적용되는 종합계획이 마련돼 있고 2026년부터 30년까지 종합계획이 현재 용역 중에 있어요.

그러나 반면에 이 백제왕도 사업은 2017년에 단 한 번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에 8년째 방치되어 있고 새 기본계획을 위한 용역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고 용역 추진을 위한 계획만 수립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제가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을 대표발의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종합계획의 수립과 지방자치단체 협의체 구성, 전담조직 설립의 법적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국가유산의 가치는 특정지역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자산인 것입니다. 이것을 체계적 유산 보존·관리 사업이 가능하도록, 위원님들께서 이 법안이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박수현 위원님의 강의가 귀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제가 2022년도 국정감사에서 지적했던 것처럼 문화재청이 국가유산청으로 재출범하면서 신라왕경추진단만 존치시켰고 백제왕도추진단은 해체되어 이 부분의 부작용에 대해서 국감에서 한 번 다룬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신라왕경의 수도를 본나라고 하면 경주에 되어 있어요. 그렇지요?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백제왕도 수도는 어디였는지 차장님, 아십니까?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부여, 공주, 익산……

○소위원장 임오경 아닙니다. 위례성이라고 처음에는 서울 강남 송파였습니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서울에도 있습니다.

○소위원장 임오경 그런데 전북과 공주, 충청도 부여 이렇게 수도를 계속해서 옮겨 다니면서 그렇게 했는데 지금에 와서…… 윤석열 정부 얘기를 안 하고 싶은 사람 중의 한 사람이지만 추진단이 두 개 다 있었는데 왜 갑작스럽게 한 곳을 없앴을까라고 생각하면 지역차별이 들어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또 안 할 수가 없어요. 이런 생각을 하지 않도록 정부에서 더 빠른 속도를 내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의원님들이 법을 발의해서 통과시켜서 진행한다는 그 방만한 행정절차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있을 수도 없는 거고, 지역차별은 앞으로도 있어도 안 된다고 생각하고 차장님, 그 자리에 계시지만 이러한 부분들이, 미비한 부분들이 있는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 찾아내셔서 공정하게 진행해 주시기를 저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행정안전부의 이견이 있는 것 같은데 이것 또한 유산청에서 잘 대응해 주실 거라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국가유산청차장 최보근 예.

○소위원장 임오경 다른 위원님들 질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백제왕도 핵심유적 보존·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을 심사한 대로 수정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법률안 심사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의결된 법률안의 체계 및 자구 정리에 대해서는 소위원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그리고 최보근 차장님과 정부 관계자 여러분 그리고 수석전문위원과 보좌진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출석 위원(7인)

박수현 손 솔 이기현 이소희 임오경 조계원 조은희

○출장 위원(1인)

정연욱

○출석 전문위원 및 입법심의관

수석전문위원 박재유

○정부측 및 기타 참석자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김영수

문화예술정책실장 정향미

콘텐츠미디어산업관 최성희

국제문화정책관 김현준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장 김경화

국가유산청

차장 최보근

유산정책국장 이길배

역사유적정책관 이종훈

○출석 진술인

뉴미디어영상콘텐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안

김재현((주)지에이치스튜디오 대표)

오하영(한국문화관광연구원 부연구위원)

사진진흥에 관한 법률안

박주석(명지대학교 기록정보과학전문대학원 교수)

천경우(중앙대학교 예술대학 사진학과 교수)